

지방 재정

Local Finance Association Magazine

2018 제1호 Vol.37

조화로운 지방재정발전을 이어가는
지방재정 정책 전문지

再_재정의 재·정의
'2018 지방재정 정책을 전망하다'

正_재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본청 계약심사과 '서울형품세'

探_재정을 위한
지방 비만세

□_지방재정을 말하다
지방재정 Q&A



再正探口

2018 제1호 Vol.37

통권

제37호(2018년 제1호) 격월간

발행인

곽임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발행일

2018년 3월 28일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www.moel.go.kr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ebook.lofa.or.kr



기획·디자인·제작

(주)대통기획

편집인

김광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편집위원

곽채기(동국대학교 교수)

김연중(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김장호(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박재용(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송경주(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주민수(한양대학교 교수)

10명(편집위원은 가, 나, 다 순임)



편집간사

지성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협력팀)



<지방재정>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004 LOFA C&A 2021 비전체계도



특별기획 재정(財政)의 재(再):정의(定義) '2018 지방재정 정책을 전망하다'

- | | |
|-------------------|-------------------------------------|
| <u>010</u> 재정정책과 | 2018년 지방재정 및 예산운용 방향 김장호 |
| <u>022</u> 재정협력과 | 2018년 지방재정제도 운용 방향 박재용 |
| <u>028</u> 교부세과 | 2018년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 방향 송경주 |
| <u>042</u> 회계 제도과 | 2018년 지방 회계·계약 및 공유재산제도 운용 방향 김연중 |



재정에 의한 공제회 업무 이야기

- | | |
|------------------------|---|
| <u>060</u> 현장스케치 | 서울특별시 본청 계약심사과 |
| <u>068</u> 인포 | 숫자로 보는 성공 프로젝트 |
| <u>070</u> 재정 아이디어 | 2017 지방재정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자립도 꼴찌의 노하우로 자체세원을 발굴하다!' |
| <u>076</u> 5분 발언대 | 2018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
| <u>080</u> 지방재정 대내외 이슈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외 |



재정을 위한 재정 연구

- | | |
|-----------------------|--------------------------------|
| <u>090</u> 특집 기고문 | 지방 비만세 이원희 |
| <u>102</u> 글로벌 현장 리포트 | 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황진영 |
| <u>108</u> 우리시대 청백리 | 지지당 송흥(宋欽) 선생 |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말한다

- | | |
|----------------------|----------------------------|
| <u>112</u> 광고로 보는 세상 | 굽네치킨 '갈비천왕' |
| <u>116</u> 여기 VS 저기 | 여의도 벚꽃 축제 VS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 |
| <u>120</u> 지방재정 Q&A |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 |
| <u>124</u> LOFA 뉴스 | |
| <u>126</u> 독자퀴즈 | |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FA history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혁

1960 1980 1990

1964. 0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발기

1964. 09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등기

1983. 01
공공청사정비사업 신설

1988. 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법인 명칭 변경

1989. 06
공공시설 및 재산조성사업 추가

1992. 01
목적사업추가 및 상임이사제 등 실시

1993. 05
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국제협력업무 신설

1994. 01
지방관공선 공제사업 신설

1998. 02
지방자치단체배상공제사업 신설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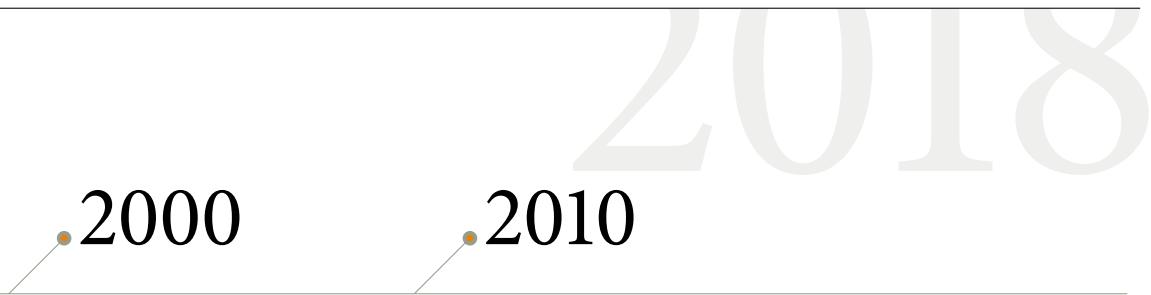
major business
주요사업

공유재산(건물·시설물·관공선)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영조물의 하자 또는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지원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회계 통계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2000

2002. 10
사업명 변경 및 경영공시 명시

2003. 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법률 제6872호)

2008. 01
옥외광고사업 추가

2008. 05
옥외광고센터 개소

2009. 12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범위 확대

2010. 0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2011. 03
간판문화 선진화 공동협력 협약 체결

2012. 04
전략체계 및 핵심가치 선포식 개최

2012. 09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CI 선포식 개최

2013. 01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및
지역개발지원 공제사업 추가

2014. 01
지방관공선건조비 사업 추가

2014. 09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2015. 12
옥외광고 관련 통계작성지정기관 선정

2016. 02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2016. 09
국제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지원 마련 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 FINANCE ASSOCIATION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재정 컨설팅, 정책·데이터 연구,
정책 콘텐츠 지원사업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 제도연구를 위한
지방회계통계사업

국제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지원 마련 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business organization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조직

공제 사업본부	업무	전화번호	
	지방재정지원사업 운영, 국제협력 업무, 지방재정 융자	02-3274-2052	
	지방재정발전 자문기구 운영, 정책 연구 지원, 공모전 운영	02-3274-2053	
	재정협력사업 운영, 국제학술협력 네트워크, 도서발간	02-3274-2054	
	단체상해, 공제사업 교육 및 지부관리, 정책대응	02-3274-2011	
	재해복구, 공유재산, 위험관리 컨설팅, 성과관리	02-3274-2012	
	재해복구, 네트워크 구축, 위원회 운영, 사업 DB 관리	02-3274-2013	
	지방관공선, 사업DB관리, VOC, 회원포탈 관리	02-3274-2014	
	건설공사공제 등록·결산, 공제계수 조정	02-3274-2021	
	영조물·업무·행정종합공제 업무, BCMS컨설팅	02-3274-2023	
	영조물공제 등록 및 사고관리, VOC관리, 배상 컨설팅	02-3274-2024	
시·도지부	시·도지부	소속	전화번호
	서울	자산관리과	02-2133-3298
	부산	회계재산담당관실	051-888-2271
	대구	회계과	053-803-3095
	인천	재산관리담당관실	032-440-2679
	광주	회계과	062-613-3136
	대전	토지정보과	042-270-6493
	울산	회계과	052-229-6372
	세종	세정과	042-270-6493
	경기	회계과	031-8008-4180
	강원	회계과	033-249-2339
	충북	회계과	042-220-2836
	충남	세무회계과	041-635-3645
	전북	회계과	063-280-2334
	전남	회계과	061-286-3481
	경북	회계과	054-880-8543
	경남	회계과	055-211-7898
	제주	세정담당관실	064-710-6918
옥외 광고센터	업무	전화번호	
	사이프로티어, 홈페이지, 웹진	02-3274-2812	
	옥외광고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02-3274-2825	
	정책제안 연구, 옥외광고 통계 구축	02-3274-2822	
	해외통신원 운영, 해외 정책정보 생산	02-3274-2823	
	불법광고물 감축 캠페인 및 공모사업, 전수조사	02-3274-2832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불법광고물 감축 캠페인	02-3274-2835	
	광고사업 운영, 간담회, 정책 홍보	02-3274-2841	
	좋은간판나눔프로젝트, 디자인 컨설팅	02-3274-2855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및 연구	02-3274-2852	
지방 회계통계 센터	우수지역 현장학습, 우수간판, DB 구축 및 운영	02-3274-2853	
	업무	전화번호	
	예·결산 연계방안 마련, 자산·부채통계 산출관리	02-3274-2311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및 지방재정통계 정책 지원	02-3274-2312	
	지방재정통계 활용 및 개선 사례조사	02-3274-2313	
	지방회계제도 개선방안 및 유용성 강화방안 연구	02-3274-2322	
	지방회계 교육, 현장지원단, 국외단기연수 운영	02-3274-2332	

LOFA C&A 2021 vision

LOFA C&A 2021 비전체계도

MISSION

지방재정 지원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VISION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2022)

사업성과 극대화 [순자산 1조 6,000억 원] + 고객지원 고도화 [회원지원 금액 700억 원] + 사회공헌 역할 확대 [당기 순이익 1% 사회 기여]

이사장 경영철학



5대 전략 방향



19대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핵심역량 사업의 운영 내실화 ② 공제 분야 신규사업 육성을 통한 수익확보 ③ 지방재정분권화에 기여하는 전문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RM체계에 기반한 리스트 및 성과 관리 고도화 ② 금융자산 건전성 제고 ③ 화관 임대수익 및 관리운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재정통계 산출 컨설팅 및 활용 연구 고도화 ② 지방회계제도 전문연구기관 ③ 지방회계(재정) 전문 교육 기관으로의 도약 발전 ④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지원하는 계약전문기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진흥 및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옥외광고센터 재도약 ② 연구 및 교육체계 고도화를 통한 옥외광고 정책 선도 ③ 신사업 발굴 및 추진, 센터 안정적 재정 지원 ④ 사업운영의 정교화로 옥외광고 산업진흥 실현 ⑤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영 체계 정착화 ② 정보시스템 품질 고도화 통한 선진형 ICT구축 ③ 가정·직장·사회의 행복과 가치를 높여 주는 일자리 혁신 ④ 'Clean LOFA'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경영 확립
--	---	--	--	--

핵심가치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
변화된 정책 및 예산운용 등을 통해
앞으로의 지방재정 정책을 전망한다.

Local Finance Association

재차, 거듭 (재)

재정[財政]의
재[再]
정의[定義]
재정을
다시
정의하다。

새로운 목표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 봄. 행정안전부는 이미 부서별 업무 계획을 통해 2018년도 주요 실행 업무와 운용 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회계 제도과 등의 2018년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지방재정 정책과 예산 운용 방향 등 올해의 지방재정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재정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재정 정책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재정의를 내리는 기획특집 '재정[財政]의 재[再] 정의[定義]'의 취지에 맞춰 전년도와 통합재정수지를 비교해 현재 지방재정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운용 방향에 관한 전망을 소개했다. 또한, 재정협력과에서는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과 관련한 지표체계를 통해 2017년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마련과 위기관리 제도 운용 방향을, 교부세과에서는 교부세의 전반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2018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덧붙여 지방재정이 가진 의미를 재점검했다. 마지막으로 회계 제도과에서는 정책별 기준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 제도의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운용에 관한 전망을 공유했다.



김 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지방재정은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2018년 현재, 연간 2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또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운영해 왔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보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지에서 2018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8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향

I. 머리말

2018년 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려 한다.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재정균형장치 마련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분권을 통해 열악한 지방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243개 자치단체의 재원이 골고루 분배되어 지방이 주민을 위해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재정은 확충된 재원으로 지역사회의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출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및 예산 현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2018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및 예산 현황

1. 2018년도 통합재정 현황

통합재정 규모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합한 재정 규모에서 이월금, 보전거래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정확한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통합재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국가 재정은 오래전부터 통합재정 기준으로 발표되어 왔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수입 규모는 190조 8,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222억 원(8.5%)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지출은 209조 3,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1,532억 원(10.1%) 증가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18조 5,00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에 포함한 재정수지도 5,940억 원 적자로 전망된다.

<표 1> 통합재정수지

(단위 : 억 원, %)

구분	2017년		2018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지(I)	△143,692	△247,738	△185,002	△41,310	62,737
통합재정수입 ¹⁾	1,758,162	1,962,947	1,908,384	150,222	△54,563
통합재정지출 ²⁾	1,901,854	2,210,686	2,093,386	191,532	△117,299
순세계잉여금(II)	191,989	318,960	179,061	△12,927	△139,898
재정수지(I+II)	48,297	71,221	△5,940	△54,238	△77,162

통합재정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일반회계가 168조 237억 원으로 전체의 88.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11.0%, 기금 1.0% 순이다. 통합재정지출에서는 일반회계가 162조 6,392억 원으로 77.7%를, 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20.4%, 1.9%를 차지한다.

1) 통합재정수입 = 일반회계 수입 + 특별회계 수입 + 기금 수입 - 내부거래-보전수입(차입금, 지난 연도 이월금 등)

2) 통합재정지출 = 일반회계 지출 + 특별회계 지출 + 기금 지출 - 보전지출(지방채상환, 예치금 등)

<표 2> 회계별 통합재정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입	1,758,162	1,962,947	1,908,384	150,222	△54,563
일반회계	1,539,304	1,719,217	1,680,237	140,933	△38,980
특별회계	197,656	213,300	208,431	10,775	△4,869
기금	21,202	30,431	19,717	△1,485	△10,714
통합재정지출	1,901,854	2,210,686	2,093,386	191,532	△117,299
일반회계	1,474,216	1,723,082	1,626,392	152,176	△96,691
특별회계	390,285	445,495	426,463	36,178	△19,032
기금	37,353	42,108	40,531	3,179	△1,577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특별시, 광역시와 도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반면 기초 단체가 없는 특별자치시(세종)와 특별자치도(제주) 및 시·군·자치구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광역·기초 자치단체간의 재원 이전 때문이다.

<표 3> 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입	1,758,162	1,962,947	1,908,384	150,222	△54,563
특별시	233,214	232,666	254,056	20,842	21,390
광역시	316,900	339,242	344,667	27,767	5,425
특별자치시	10,231	11,168	11,018	787	△150
도	560,364	623,249	603,442	43,077	△19,808
특별자치도	40,409	43,747	43,974	3,565	227
시	362,814	433,539	394,750	31,936	△38,789
군	159,544	198,248	177,194	17,649	△21,054
자치구	74,685	81,088	79,284	4,599	1,804
통합재정지출	1,901,854	2,210,686	2,093,386	191,532	△117,299
특별시	158,194	170,788	172,636	14,442	1,848
광역시	188,913	212,424	208,939	20,025	△3,486
특별자치시	11,820	13,632	14,256	2,436	624
도	224,593	251,289	236,690	12,097	△14,599
특별자치도	42,359	47,565	46,956	4,597	△609
시	671,549	808,282	746,873	75,324	△61,409
군	303,723	372,124	330,991	27,268	△41,133
자치구	300,702	334,580	336,045	35,343	1,464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수입의 경우 지방세(40.8%), 보조금(25.2%), 지방교부세(19.8%), 세외수입(12.4%) 순으로 비중이 높고, 지출은 사회복지(27.2%), 인력운영비(13.3%), 환경보호(9.8%)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총 57조 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9,150억 원(16.1%)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분야,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이 높은 항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지출 경직도가 높은 실정이다.

<표 4> 분야별 통합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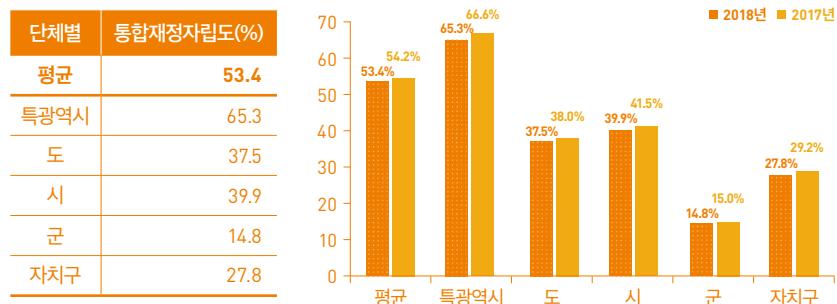
(단위 · 양 · 원)

구분	2017년		2018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입	1,758,162	1,962,947	1,908,384	150,222	△54,563
지방세	711,891	750,239	779,140	67,249	28,901
세외수입	231,673	274,500	236,306	4,633	△38,194
지방교부세	337,384	433,824	378,721	41,337	△55,103
보조금	440,729	468,048	480,368	39,639	12,320
융자회수등 ^(*)	36,485	36,336	33,850	△2,635	△2,486
통합재정지출	1,901,854	2,210,686	2,093,386	191,532	△117,299
일반공공행정	104,478	119,062	116,422	11,944	△2,640
공공질서및안전	32,167	42,008	35,687	3,520	△6,321
교육	116,723	134,877	129,338	12,615	△5,539
문화 및 관광	97,112	125,026	101,836	4,724	△23,190
환경보호	187,294	219,754	204,659	17,365	△15,095
사회복지	491,160	531,731	570,310	79,150	38,578
보건	32,029	38,644	35,866	3,837	△2,778
농림해양수산	124,595	155,648	133,845	9,249	△21,803
산업·중소기업	49,401	62,754	53,974	4,573	△8,780
수송 및 교통	158,101	215,291	174,179	16,078	△41,112
국토 및 지역개발	126,400	171,352	141,717	15,317	△29,635
과학기술	4,773	5,426	4,612	△161	△814
예비비	48,443	83,217	50,666	2,223	△32,550
인력운영비	258,505	261,480	279,421	20,916	17,941
기본경비등	70,672	44,417	60,854	△9,818	16,438

한편 통합재정수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중인 통합재정자립도는 53.4%로, 2017년 54.2%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등 자체수입의 증가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수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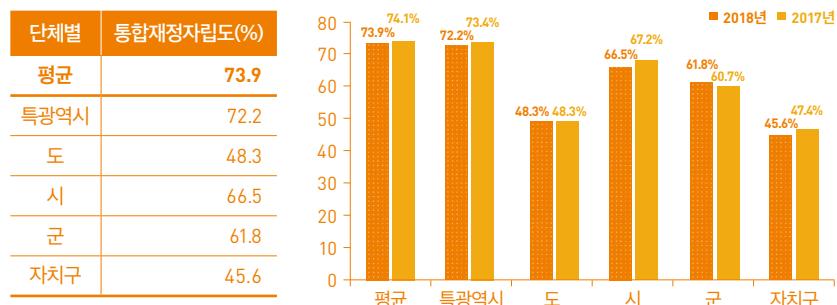
주) 융자회수 등 = 융자회수 + 공사공단
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표 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자립도 현황



통합재정수입 대비 자주재원 비중인 통합재정자주도 역시 2017년 74.1%에서 0.2%p 감소한 73.9%로 나타났다. 자주재원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표 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자주도 현황



2. 2018년도 지방예산 개요

2018년도 당초예산 순계 규모는 잠정 210조 6,740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93조 1,532억 원에 비해 17조 5,208억 원(9.1%)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2016년(6.5%)과 2017년(4.6%)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표 7> 예산규모 변동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2017년	전년대비	2018년	전년대비
당초예산(A)	1,732,590	1,845,825	6.5	1,931,532	4.6	2,106,740	9.1
최종예산(B)	1,999,764	2,147,816	7.4	2,279,676	6.1	-	-
{(B-A)/A}	15.4	16.4	-	18	-	-	-

자체수입의 비중이 2017년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자체수입의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증가 예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의 합계 값으로 2018년 국가 예산 규모(46조 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8> 연도별·세입재원별 순계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2014년	전년대비	2015년	전년대비	2016년	전년대비	2017년	전년대비	2018년	전년대비
계	1,635,793	4.3	1,732,590	5.9	1,845,825	6.5	1,931,532	4.6	2,106,740	9.1
	1,808,754	2.2	1,999,764	10.6	2,147,816	7.4	2,279,676	6.1	-	-
자체수입	750,895	△13.8	797,012	6.1	866,726	8.7	935,253	7.9	1,006,066	7.6
	803,003	△17.3	898,123	11.8	951,213	5.9	1,008,350	6	-	-
지방세	544,751	1.4	594,523	9.1	648,401	9.1	711,891	9.8	779,140	9.4
	581,842	10.4	649,029	11.5	689,207	6.2	750,239	8.9	-	-
세외수입	206,145	△38.3	202,489	△1.8	218,326	7.8	223,362	2.3	226,926	1.6
	221,162	△50.2	249,095	12.6	262,006	5.2	258,111	△1.5	-	-
이전수입	692,590	5.5	733,766	5.9	749,718	2.2	778,057	3.8	858,760	10.4
	744,664	3.5	783,169	5.2	824,187	5.2	901,666	9.4	-	-
지방교부세	316,006	0.4	315,849	-	319,527	1.2	337,384	5.6	378,699	12.2
	352,272	0.3	342,200	△2.9	373,103	9	433,792	16.3	-	-
보조금	376,584	10.2	417,917	11	430,191	2.9	440,673	2.4	480,061	8.9
	392,392	6.5	440,969	12.4	451,085	2.3	467,874	3.7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3,580	100	153,605	7	191,615	24.7	195,465	2	222,009	13.6
	211,966	100	262,957	24.1	331,843	26.2	345,484	4.1	-	-
지방채	48,727	19	48,207	△1.1	37,766	△21.7	22,757	△39.7	19,905	△12.5
	49,120	△38.1	55,515	13	40,573	△26.9	24,176	△40.4	-	-

주) 상단은 당초예산, 하단은 최종예산

지역별로는(순계기준) 경기도가 43조 2,591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0.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예산이 31조 9,856억 원(15.2%)로 그다음이다. 인천광역시의 10조 3,161억 원을 합친 수도권의 예산 규모는 85조 5,60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시·도별(기초 포함)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시·도별	순 계	총 계 (A+B)	일반회계 (A)	특별회계(B)	
				기타	공기업
합계	2,106,740	2,843,914	2,378,971	464,944	302,872
특별시계	319,856	457,777	357,622	100,155	82,353
서울특별시	319,856	457,777	357,622	100,155	82,353
광역시계	439,820	604,260	502,483	101,777	68,870
부산광역시	117,176	160,147	133,584	26,563	19,246
대구광역시	82,589	115,205	94,201	21,005	14,153
인천광역시	103,161	139,105	112,214	26,891	16,915
광주광역시	47,317	66,047	57,139	8,908	6,470
대전광역시	45,962	65,138	56,142	8,996	6,009
울산광역시	43,615	58,618	49,204	9,415	6,077
특별자치시계	14,231	15,033	11,320	3,713	1,735
세종특별자치시	14,231	15,033	11,320	3,713	1,735
특별자치도계	47,841	50,297	41,832	8,465	4,385
제주특별자치도	47,841	50,297	41,832	8,465	4,385
도계	1,284,993	1,716,547	1,465,714	250,833	145,529
경기도	432,591	569,198	454,362	114,835	59,988
강원도	101,550	133,367	117,708	15,659	8,926
충청북도	80,164	108,564	95,155	13,410	8,154
충청남도	112,138	150,433	132,427	18,006	9,445
전라북도	107,388	146,904	133,232	13,673	8,097
전라남도	131,854	178,764	159,715	19,049	13,450
경상북도	165,652	223,143	194,077	29,066	19,434
경상남도	153,655	206,174	179,039	27,135	18,034

III. 2018년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방향

1.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정부의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재정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건전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의 일례로 지방채무는 2013년 28.6조 원에서 2016년 말 기준 26.4조 원으로 지속 감소하였고, 채무가 없는 단체도 2013년 57개에서 2016년 말에는 90개 자치단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의 기조는 유지하되, 자치분권에 맞게 자율성 확대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을 대폭 개정하였다.

첫째, 의회 경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는 그동안 각각 항목(통계목)별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을 정하여 통제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3개 항목을 묶어 총액한도만 정하고 한도액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를 신설하여 지방의원 역량개발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선택항목)는 자치단체 별로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업무추진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정규직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보조금 총액한도'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가 일자리 확충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부담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된 '행정협의회' 및 '전국 4대 협의체'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체) 회장단체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의장 업무추진비 평균액의 30% 내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준경비로 관리하던 '월액여비'와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를 기준 경비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행사축제예산의 신설 및 성과에 대해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행사축제별로 원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사축제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간인 위탁교육비'를 신설하여 범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민간인 위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향후에도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편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 기준을 완화하였다.

* ('13년) 287건 → ('14년) 482건 → ('15년) 447건 → ('16년) 533건→ ('17년) 592건으로 '13년 대비 '17년 현재 2.06배 증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중앙심사	(시 도)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시군구)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상

또한,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및 실질적인 사업비 전액은 국비이나 자치단체 공유재산 또는 용역비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개편 전	개편 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일원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동시에 국가공기업(LH, KAMCO)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였다.

또한,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다.

3.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그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한도제를 통해 지방채무는 '16년 2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원 감소하는 등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채무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채무제로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채무 감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와 재정운용의 자율성 요구 등을 감안하여 채무관리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지방채무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고, 지방채를 통한 예산낭비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승인할 계획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지방재정법」개정 등을 거쳐, 적용될 계획이다.

2018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향



4.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사후적으로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들도 병행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집행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언론 및 지방의회의 지적, 민원 등 발생 시 자치단체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위기관리 모니터링의 월별 실시(기존 분기별 실시) 및 예산편성, 투자심사, 채무 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가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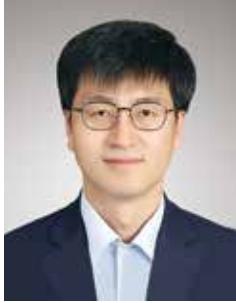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 365'를 통해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며, 채무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치단체별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 365'에 이를 공개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체계적 채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낭비를 막고 감시하는 장치로 도입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도 100명에서 246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각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자율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IV. 맷음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른 만큼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왔다. 재정 분권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경험과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제도들을 잘 다듬어 나가겠다. 2018년은 강력한 재정 분권이 실현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글 박재용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

2018년 지방재정제도 운용 방향

재정분석, 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영향평가, 재정공시

I. 들어가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의 화두는 단연 재정 분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하며, 지방의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등을 포함한 재정 분권 이행계획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재정 분권 TF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보다 커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과 분권의 효과를 충분히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의 변화양상과 관련하여 2018년도 지방재정 분석과 공개, 그리고 위기관리 등의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18년 지방재정제도의 운용 방향

1.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가. 지방재정분석 내실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실시해왔다. 재정분석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상 문제점을 발굴해주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

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수단체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부진단체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자치단체는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특·광역, 도, 시, 군, 구)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산 시점에 맞추어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활용한 서면 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7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분야	세부지표(22개)	배점(1,000점)
건전성(7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수지관리 2개 지표 관리채무비율 등 채무(부채)관리 3개 지표 공기업부채비율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500
효율성(12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등 세입효율 6개 지표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세출효율 6개 지표 	500
책임성(3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법령준수, 재정분석대응도 등 3개 지표 	기감점

2018년에는 재정분석 지표체계 개선 등 제도 정비와 함께 재정진단 제도를 재정 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관리제도와는 별도로 ‘재정진단-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이행평가’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재정분석 미흡 단체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월 중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재정진단 및 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용 강화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능력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시 모니터링은 재정수지, 지방채무 등 5개 관점의 7개 재정지표를 선정,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 단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시행 이후 성과>

- 예산대비채무비율 주의기준(25%) 초과단체 감소 : 9개(2011) → 1(2016)
- 채무 zero단체수 증가 : 40개(2010) → 57(2013) → 70(2015) → 90(2016)
- 예산대비채무비율 : 18.4%(2010) → 15.5%(2013) → 13.4%(2015) → 11.8%(2016)

2018년에는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관리 부문 재정지표인 예산대비채무비율 및 채무상환비 비율 채무 범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BTL 임차료를 포함한다. BTL 임차료는 사실상 확정된 채무이나 채무로 관리하지 않아 재정건전성 측정에 한계가 있고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에는 포함시켜 제도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올해 시범 모니터링 후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2. 지방 주도의 지방재정 협의를 통한 책임성 강화

가. 지방 주도의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개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앙관서의 법령과 예산안 등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4년에 도입되었다. 2017년 9월 기준, 총 160건(지방자치단체 157 건, 중앙부처 3건)의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실시됐는데, 이 제도를 통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사업의 도입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아직 낮은 편이고, 의원입법에 따른 법률 제·개정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행정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준이 동일한 점,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 와의 충복되는 점, 공모사업 일정 등이 촉박하여 평가 시기가 지켜지지 않는 점 등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나. 지방재정 협의 네트워크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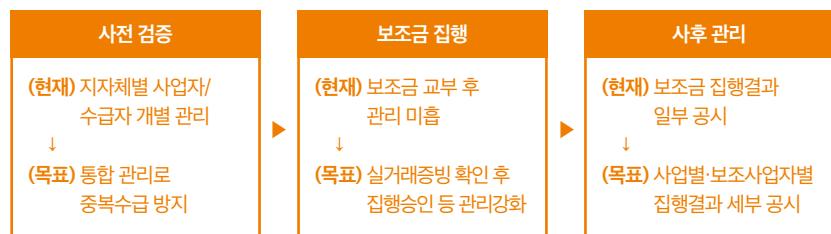
재정 분권으로 지방재정은 큰 틀에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밀착형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재원 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미세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조정교부금, 국고보조 사업 대응지방비 광역-기초 간 분담기준 등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예산담당관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협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방재정 부담협의 등의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 발생으로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등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정부 차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지방보조금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방법 등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로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부정 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수급·집행내역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시스템 구축 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고 및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현황 및 개선목표>



나. 지방재정공개 강화

행정안전부는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재정공개사이트 '재정고'를 대폭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재정정보까지 한 곳에서 통합하여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2016년 3월 시범서비스 운영을 거쳐 2016년 5월부터 정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재정 365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공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메인화면에 관심지표 및 검색창을 정면배치하고, 지자체 간 현황을 한눈에 비교하는 히트맵, 어린이 교육자료 제공 등 일반 국민이 지방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2018년에는 지방재정 365에서 공개하고 있는 각 지방재정지표에 대한 상세설명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지방재정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주요재정지표 상황판을 메인화면에 게시하여 지방재정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자료 검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이용빈도 수가 낮았던 맞춤형 통계 검색의 기능을 개선하여 시계열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과거의 자료 또한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인포그래픽 및 어린이 배움터 콘텐츠 확대, 뉴스레터 발송, 웹툰 제작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365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 할 계획이다.

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내실화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용의 결과와 주민 관심 사항 등을 매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결산기준 공시제도(매년 8월)를 운영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 기준 공시제도(매년 2월)가 추가되어 재정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공시 항목 중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에 통합하여 비교·공개하는 통합공시 제도(예산 기준 매년 4월, 결산기준 매년 10월)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주민 관심이 높은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등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 공개가 필요한 지표들을 발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도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운영을 강화해 주민 관심 정보에 대한 공시항목을 더욱 정비·확대할 예정이다.

III. 나오며

재정 분권과 개헌 논의 등 올해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듯하다. 재정 분권으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재정 분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관심이 그만큼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권의 이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글 송경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2018년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용 방향

I. 머리말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족하고 편재된 지방세원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영국 등 교부세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선진국과는 달리 내국세의 일정률을 법률로 정함으로써(법정률) 지방의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재원을 충당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8년 지방교부세 총규모는 45조 9,805억 원으로, 최근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2017년 40조 7,314억 원보다 5조 2,0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여기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2018년도 운용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2018년 지방교부세 현황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산정되는 정률분(定率分) 교부세, 종합부동산 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뉘는데, 2018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45조 9,805억 원으로, 정률분 교부세 43조 7,831억 원, 부동산교부세 1조 7,801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4,173 억 원으로 구성된다.

<2018년 지방교부세 예산규모>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17예산	'18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407,314	459,805	52,491	12.9
정률분 (19.24%)	계	387,397	437,831	50,434
	보통교부세(97%)	375,775	424,696	48,921
	특별교부세(3%)	11,622	13,135	1,513
부동산교부세	15,328	17,801	2,473	16.1
소방안전교부세	4,588	4,173	△415	△9.1

※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비율 변화 : (~'04년) 90.9:9.1, ('05~'13년) 96:4, ('14년~) 97:3

정률분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뉘는데 특별교부세는 1조 3,135억 원이고,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보전(補填)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교부세는 42조 4,696억 원이다.

1. 보통교부세

가. 보통교부세 제도 개요

보통교부세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전체의 92.4%를 차지하는 근간 항목이다. 보통교부세는 기본적인 표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법 취지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교부하는 일반 재원이다.

기준재정수요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자체노력으로 구성되는데, 기초수요는 4개 분야(일반행정, 문화환경, 사회복지, 지역경제)의 16개 세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인구 수, 공무원 수, 행정구역 면적 등)에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보정 수요는 법정수요,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그리고 사회복지균형 수요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노력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자구노력을 수요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액의 80%로 산정하는 기초수입, 지방세 외의 경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 등 및 그 정산

분의 80%로 산정하는 보정수입,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과 관련한 자체노력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재정부족액이라고 하는데, 전국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분모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교부될 3% 및 불교부단체에 교부될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공제한 보통교부세 총액을 분자로 하여 조정률을 구한 후, 이를 각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곱하면 보통교부세액이 산정되게 된다.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개요>



2018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항목 신설 등 자체노력 항목에 대한 변화가 많았다. 일자리 창출 항목은 2017년도 9월 이후의 실적분부터(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읍·면·동 통합운영 항목은 2014년에 폐지되었으나 2013년까지 통합한 자치단체까지를 대상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해 5년간 반영해 왔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나. 2018년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내용

그동안 보통교부세 제도는 산정의 객관화·합리화·형평화·단순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8년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산정방식의 시의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및 지역 공공수요를 확대·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노력 분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준재정수요 분야>

❶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4개 측정항목의 반영비율을 26%에서 30%로 확대하였다.(2016년에 20%에서 23%로, 2017년에 23%에서 26%로 각각 인상)

❷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강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을 유인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하였던 출산장려 수요를 대폭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고령단체 일부 구간에 대한 가중수요 반영률을 상향하였다.

❸ 주민등록인구수 산정방식 개선

기준재정수요의 주요 측정단위 중 하나인 주민등록인구수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은 거주자, 거주 불명자, 재외국민 등 3개로 나뉘는데, 실존 여부가 불명확해 실질적 행정수요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되어 온 거주 불명자와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인구 산정 시 제외하였다.

❹ 지역 공공성 및 연대성 가치 강화

지역사회의 공공성 및 연대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해 생활형 집단거주시설, 송·변전시설, 장사시설 등 기파시설과 관련된 수요의 반영률을 상향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관련 보정수요 대상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도 새로 포함시켰다.

❺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수요 정비

시의성이 떨어지는 수요의 폐지 및 유사 수요 간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보정인구 수요 유형도 기존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 수요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유동인구 수요, 도시공원 수요 등의 기중치를 확대하였다.

❻ 일몰제 확대

무분별한 수요 확대·남설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새로 도입한 일몰제를 큰 폭으

로 확대하였다. 일몰 대상 수요는 일몰 기간 내에 운용한 후 행정환경, 사회요구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적용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체노력 분야>

① 일자리 창출 지원 지표 신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관련 지표를 자체노력 분야에 신설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인건비 건전운영 자체노력 항목 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였다. 다만, 자치단체 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가 가시화되는 2018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강화를 위해 자체노력 항목 정비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 중 측정기준이 오래되어 시의성이 떨어진 온실가스 항목을 폐지(2019년 산정 시부터)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을 2018년 결산분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다.

③ 세입확충 자체노력 항목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의 반영률(150%)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 반영률(180%)과 동일하게 개선하였고, 탄력세율 자체노력 대상 세목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감면액 축소 항목도 법정감면율 대비 조례감면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측면을 강화하였다. 이 역시 2018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개요

먼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한 기준재정수요액은 109조 4,0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기준재정수입액은 67조 9,424억 원으로 14.8% 증가했다.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준재정수요액 분포를 보면, 시가 가장 큰 32.8%(358,381억/1,094,095억)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도, 군, 광역시, 특별시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재정수입액에서도 시가 가장 큰 비중(28.6%(193,989억 / 679,424억))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다음으로 도, 광역시, 특별시, 군 순으로 나타나, 군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간의 불균형(18.6% 대 6.1%)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단위 : 억 원)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17년	'18년	증감	%	'17년	'18년	증감	%
계	757,850 (956,852)	863,171 (1,094,095)	105,321 (137,243)	13.9 (14.3)	373,166 (592,044)	416,518 (679,424)	43,352 (87,380)	11.6 (14.8)
특별시	(113,257)	(128,706)	(15,449)	(13.6)	(126,131)	(138,815)	(12,684)	(10.1)
광역시	161,759	189,783	28,024	17.3	124,693	142,586	17,893	14.3
세종시	5,352	6,538	1,186	22.2	4,587	6,031	1,444	31.5
도	123,044 (179,291)	141,872 (207,381)	18,828 (28,090)	15.3 (15.7)	69,642 (126,207)	78,151 (156,256)	8,509 (30,049)	12.2 (23.8)
시	285,705 (315,203)	321,672 (358,381)	35,967 (43,178)	12.6 (13.7)	136,210 (172,392)	148,004 (193,989)	11,794 (21,597)	8.7 (12.5)
군	181,990	203,306	21,316	11.7	38,034	41,746	3,712	9.8

※ () 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수치를 합산한 금액임

한편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0.915로 전년의 0.941보다 0.026 축소되었다. 최근 10년간 조정률은 2010년 0.825, 2012년 0.925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0.85~0.89 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 교부세 재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0.941로 급증하였다가, 2018년 기준재정수요액이 110조에 육박하는 등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정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2018\text{년조정률} = \frac{\text{보통교부세 } 408,892\text{억 원(제주3% 등 제외*)}}{\text{재정부족액 총액 } 446,653\text{억 원}} = 0.915$$

* 제주 3%(12,741억), 분권교부세 보전분(3,063억)

<연도별 조정률(재정부족액 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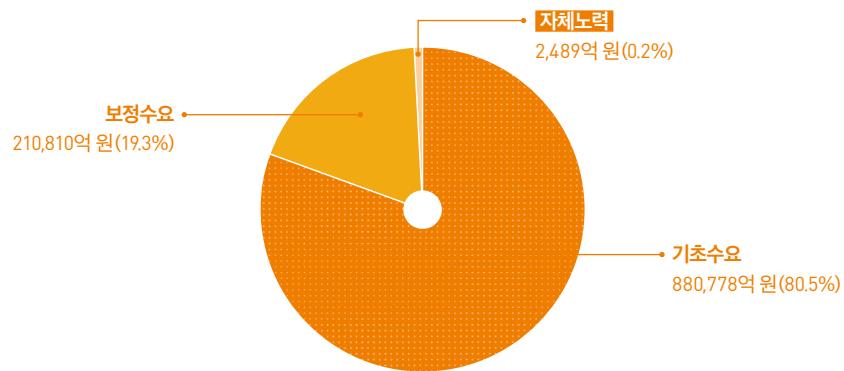


기준재정수요액을 항목별로 보면, 기초수요가 88조 787억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77조 6,517억 원에 비해 13.4% 증가했고, 보정수요는 21조 810 억 원으로 19.3%를 차지하며 전년도 17조 5,329억 원에 비해 20.2% 증가하였다. 한편 자체노력은 2,498억 원으로 0.2%를 차지하며 전년도 5,007억 원 대비 50.1% 감소

했는데, 인센티브와 폐널티의 절댓값 합계(10,842억 원)는 전년도(10,913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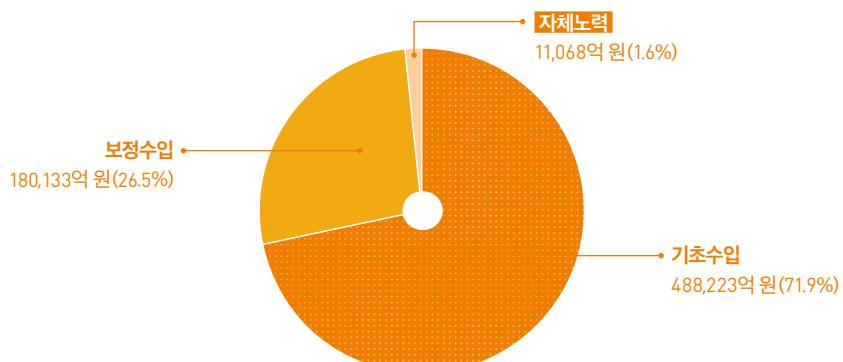
보정수요는 지역균형수요 8조 664억 원, 사회복지균형수요 6조 3,810억 원, 조정교부금 4조 9,448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노력은 인센티브 6,670억 원과 폐널티 4,1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와 폐널티 모두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2,557억 원, 2,774억 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구성>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이 48조 8,223억 원으로 71.9%를 차지하며 전년도 44조 1,443억 원 대비 10.7% 증가하였고, 보정수입은 18조 133억 원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2조 9,413억 원 대비 39.2% 증가하였다. 한편, 자체노력은 1조 1,068억 원으로 1.6%를 차지하며 전년도 2조 1,488억 원 대비 48.5% 감소했는데, 인센티브와 폐널티의 절댓값 합계(2조 7,111억 원)도 전년도(3조 3,559억 원) 대비 19.2% 감소하였다.

<2018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구성>



보정수입은 지방세 정산분 6조 4,658억 원, 조정교부금 4조 9,448억 원, 경상세외 수입 3조 5,881억 원, 부동산교부세 1조 3,98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노력은 인센티브 8,021억 원과 폐널티 1조 9,09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경상세외수입 학총(3,604억 원)과 지방세징수율 제고(2,700억 원)에서, 폐널티는 지방 세 체납액 축소(1조 3,788억 원)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3,260억 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수입 자체노력의 2018년 총규모(절댓값)는 3조 7,953억 원으로, 수요 자체노력 1조 842억 원(인센티브 6,670억 원+폐널티 4,172억 원), 수입 자체노력 2조 7,111억 원(인센티브 8,021억 원+폐널티 19,090억 원)으로 구성되며, 인센티브는 1조 4,691억 원, 폐널티는 2조 3,262억 원이다. 자체노력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으며 인센티브는 증가하고 폐널티는 감소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규모 비교>

(단위 : 억 원, %)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액			
		'17년	'18년	증감	증감률
합계(규모)		44,472	37,953	-6,519	-14.7
계(수요+수입)	인센티브	13,996	14,691	695	5.0
	폐널티	30,476	23,262	-7,214	-23.7
수요 자체노력	인센티브	7,960	6,670	-1,290	-16.2
	폐널티	2,953	4,172	1,219	41.3
수입 자체노력	인센티브	6,036	8,021	1,985	32.9
	폐널티	27,523	19,090	-8,433	-30.6

2018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42조 1,633억 원(분권교부세 보전분 3,063억 원 제외)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174개 자치단체 중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167개 자치단체가 교부대상이다. 자치구는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된다. 불교부단체인 서울, 경기, 수원, 성남, 용인, 화성, 하남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전분을 보통교부세로 보전받게 되는데, 이는 2019년까지 운영되며 2015년 이후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자치단체 유형별 교부액의 비중을 보면, 수요와 수입 간 차이인 재정부족액이 가장 큰 시가 15조 8,9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은 14조 7,902억 원으로 35.1%, 도가 5조 8,333억 원 13.8%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자치단체 유형별 분포>

(단위 : 억 원, %)

구분	'17년 교부액	'18년 교부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최고/최저)
합계(167)	373,078	421,633	48,555	13.0	
소계(166)	361,805	408,892	47,087	13.0	
특별시(0)	-	-	-	-	
광역시(6)	34,862	43,207	8,345	23.9	대구 8,985 / 울산 3,030
세종시(1)	719	464	△255	△35.5	-
도(7)	50,227	58,333	8,106	16.1	강원 10,215 / 경남 5,951
시(70)	140,603	158,986	18,383	13.2	포항 4,809 / 과천 201
군(82)	135,394	147,902	12,508	9.2	해남 3,160 / 증평 616
제주도(1)	11,273	12,741	1,468	13.0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먼저 교부한다.

2.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개별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 또는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의 지방재정 여건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2018년도 재원 규모는 총 1조 3,13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51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재원의 40%인 지역현안수요 5,234억 원, 10%인 국가지방 협력수요 1,313억 원, 50%인 재난관리수요 6,56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특별교부세의 3개 수요는 모두 행안부가 통합 운용해 왔으나, 2014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수요를 관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 수요만 행안부(구 행자부)에서 관장하도록 변경(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되었다. 2017년 국민안전처가 다시 행안부로 통합되었지만, 그 운영은 구 국민안전처의 후신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맡고 있으며, 다만 특별교부세 전체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현안수요와 재난관리수요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8년 특별교부세 예산 및 지원분야>

(단위 : 억 원)

수요별	비율	'17년	'18년	증감	지원분야
총계		11,622	13,135	1,513	
지역현안	40%	4,649	5,254	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지역현안사업 - 도로, 복지관 등 지방공공시설
국가지방협력	10%	1,162	1,313	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장려사업 및 지역 역점시책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 기능 강화 등 - 행정·재정 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재난관리	50%	5,811	6,568	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 응급복구, 항구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특별교부세는 2016년부터 외부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책사업 등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매년 '지방재정 365'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2009년 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시·도는 취·등록세, 시·군·구는 재산세)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를 균형 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배분하였는데,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되면서는 그 전액을 균형 재원으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부터 포함)에 교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부동산교부세 재원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교부액	18,892	28,853	31,328	10,221	10,620	11,214	11,630	11,391	14,104	14,457	15,328	17,801

* (05년) 3,930억 원, (06년) 10,200억 원

비록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국세이지만, 세원 자체가 지방세(주택, 토지 등)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고유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자율·일반재원이다. 배분 기준은 재정여건 50%, 사회

복지 수요 35%, 지역교육 수요 10%, 부동산보유세 규모 5%를 적용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를 먼저 교부한다.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에 대한 '일부위헌' 판결,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과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2조 원 가량 감소함에 따라,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목적예비비 1조 8,600억 원을 보전해 주었다. 2010년부터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져 그 규모가 1조 원 대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재원 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조 7,801억으로 전년 대비 2,473억이 늘어났다.

4.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소방과 주민 안전관리 재원 확보의 어려움, 특히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 진압여건 악화 등 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의 곤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배 가격 인상에 맞추어 지방세의 목적세인 '소방안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안 검토과정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그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 '교부세'로 변경되었다. (2014. 12월 「지방교부세법」개정)

2015년부터 운용된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2014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 관장(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해 왔으며, 2017년 국민안전처가 다시 행안부로 통합되면서 구 국민안전처의 후신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교부액	3,141	4,147	4,588	4,173

2018년도 예산은 4,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5억 원이 감소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기준은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용하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편, 2017년 12월에는, 자치단체의 소방시설·장비의 보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토록 하였던 특례규정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을 개정하였다.



5. 지방교부세 감액(減額) 제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는 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적 폐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도 보통교부세 배정 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상응하여 각 자치 단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입 등의 징수를 태만히 하여 재정순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 위반 과다 경비지출이나 수입 징수 태만 등의 행위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령 위반사항 및 사실관계 등을 재차 확인한 후,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내용은 '지방재정 365'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개되며, 감액된 재원의 일부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들에 인센티브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감액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들에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에 따라 보전 재원으로 배분된다.

2014년 이후 자치단체의 법령위반 지출 등으로 인한 감액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감액 금액도 증가해 왔으나, 2017년 감액 금액은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교부세 감액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사례들을 모아 감액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교부세 감액 제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현황>

(다의 · 거 어워)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심의건수	866	1,411	1,503	1,623	1,602
감액반영금액	187	302	381	489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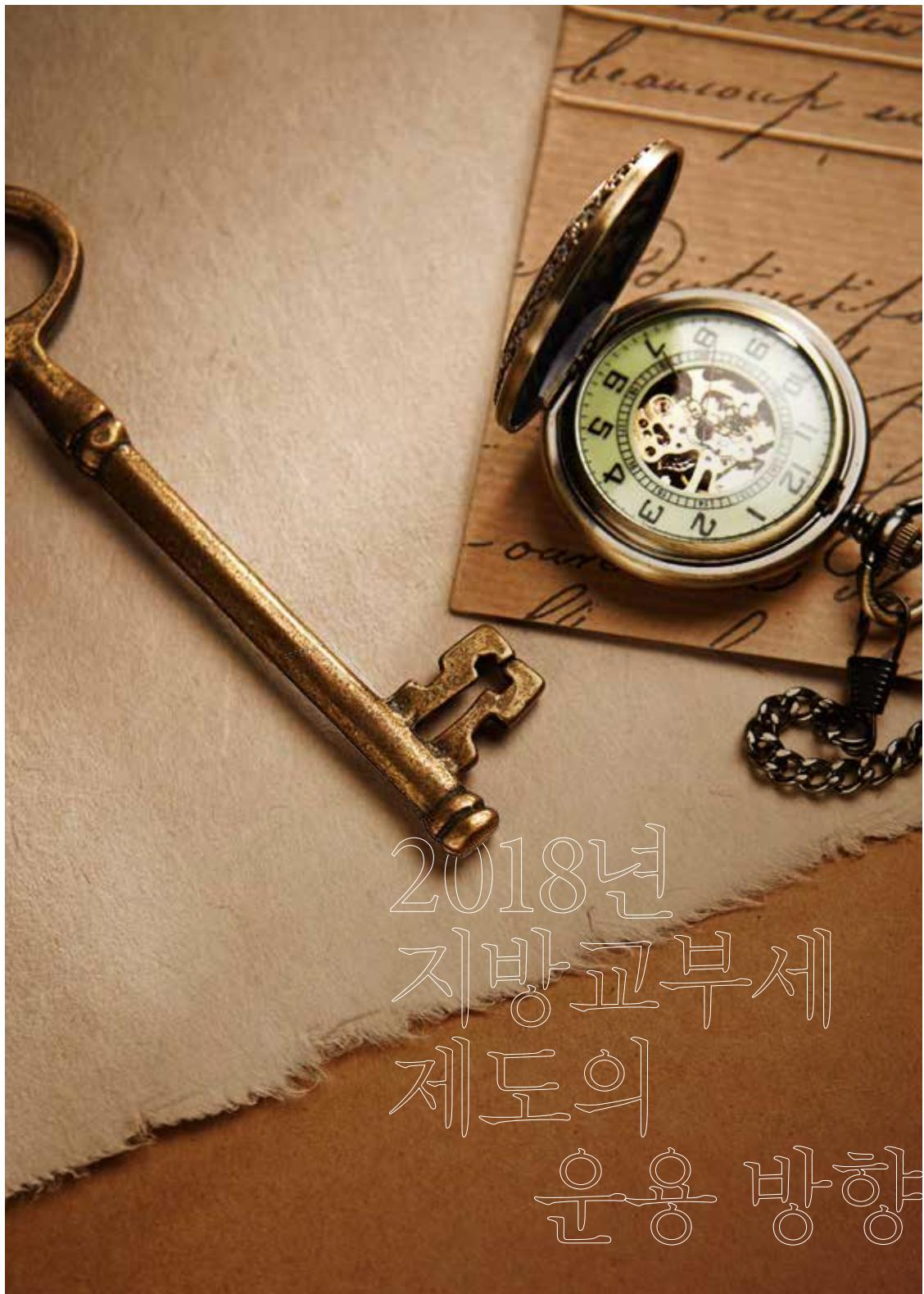
III. 맷음말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의 성공 여부가 재정 분권의 뒷받침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을 거쳐 6:4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세만 확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분배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재원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역 간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균형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또 다른 숙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즉,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외부의 지적, 즉 자치단체 참여의 부족,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복잡한 산정항목 개선을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자치단체의 예·결산 연계 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018년 1월 15일,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가는 물론 자치단체 기조실장·예산담당관 등이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를 발족시키고, 2월부터 전국 4개 권역별 토론회 및 종합 대토론회 개최, 행안부·자치단체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 각급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2018년
지방고부세
제도의
운영 방향



글 김연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2018년 지방 회계·계약 및 공유재산제도 운용 방향

I. 머리말

지난 한 해는 예년과 달리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한 정권교체 등으로 지방재정 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된 한해였다.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주민자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5대 전략 30대 과제)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분권을 위하여 지방 자주 재원 확충, 신세원 발굴,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 국고보조금 개편 등을 통해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에서 6:4로 연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 회계·계약 및 공유재산 분야도 재정 분권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 회계법 및 시행령, 자치단체 결산제도, 지방계약제도, 세출예산 집행제도, 공유재산제도 등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관련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II. 2018년도 지방 회계·계약 및 공유재산제도 운용 방향

1.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가. 그동안 성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변동 보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대상액 168.5조 원의 59.67%인 100.5조 원을 집행하여 목표율 56.5% 대비 3.17%p 초과 달성과 5.2조 원을 더 집행함으로써, 최근 5년간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률과 집행액의 최고치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러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연평균 실질 GDP 4.4조 원 정도를 증가시켰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이월·불용액 감소로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도 창출하였다.

나. 2018년 추진계획

정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7.12.27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370.1조 원 중에서 시설비 등 39개 통계목 대상액 183.4조 원의 57%인 104.5조 원을 집행할 목표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4분기에는 일자리사업 대상액 3.1조 원의 30%인 1조 원을 집행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SOC 사업을 중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 집행 강화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신속집행 효과를 체감하도록 집행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2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관계관 워크숍 개최(1.18)와 더불어 시·도 기획관리 실장 회의(1.15) 및 시·도 부단체장회의(1.19) 등을 통해 신속집행의 적극 추진을 당부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별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재정집행 현황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지원하고, 모든 대가의 당일 지급, 신속집행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 등의 ‘신속집행 추진지침’을 시행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속집행 관계관들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제도

가. 그동안 성과

지방 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회계공무원들에게는 지침서이며, 구체적인 회계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방공무원에게 재정집행에 대한 권한이 확대될수록 회계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정 보완·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에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통합재정자금 운용요령’의장을 신설하였다. 통합지출관제도가 2015년에 지방회계법령상 근거를 규정하였고, 2016년에 재무회계규칙에 자금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7.12.31까지 유예하였던 것을 2018.1.1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통합재정자금 운용요령’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내에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통합지출관이 통합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세정부서의 과장이 담당하던 예산 지출종합계획과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자금 배정업무에 관한 기능을 세정담당 부서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에 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원칙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계좌에 자금을 보관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고 은행과 협의하여 일반계좌 납입금은 당일 즉시 재정관리시스

템상 등록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이체되도록 하거나, 동 세입세출외현금계좌가 아닌 계좌로는 출금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자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은 보다 강화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통합자금은 현재 일반회계 자금을 운용하는 제1금고 이외에 특별회계나 기금의 자금은 제2금고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통합자금의 예외로 허용한 점과 일상경비의 경우 집행 권한을 각 부서로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통합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 등 수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통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겠다.

나. 2018년 추진계획

1) 지방 회계법령 개정 추진

2016. 5월에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미비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용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및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합지출관(회계과장)의 주된 사무는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있으므로 그 역할에 맞는 명칭(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자금운용관」을 추가하고,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대상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도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산·반납처리 제도 보완

국고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이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면서, 민간보조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 국고보조금 사업 담당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지방회계제도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조리와 회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대한 요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2018년부터 행안부는 본격적으로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재정집행단계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고보조금 시스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방보조금 시스템

은 정산·반납 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최대로 보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3) 지출제도 등의 개선·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환경의 변화를 예산집행에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 발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집행에 규제로 작용하는 제약은 제거할 필요가 있고, 주민복지와 행정 효율화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들도 시의적절하게 집행기준에 반영하는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회계 책임성은 높이고 재정집행의 불필요한 규제가 예산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가. 그동안 성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회계의 현금주의·단식부기 결산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한 바 있다. 10년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의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부재정통계(GFS), 공공부문부채통계(PSDS) 등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IMF 및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게 되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지방공사·공단 등의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하여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기관을 이용해 재정 상태를 왜곡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새로운 정부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 회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책임성의 강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 결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권한이 확대될수록 예산이 사용된 내역과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예산을 집행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재무회계 정보를 산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나. 2018년 추진계획

1)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의 가장 중점적인 개선은 현행 결산서를 주민이 보다 알기 쉽게 재편하고 정비 하는 데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는 있지만 결산서 내용 중의 회계용어나 문장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뜻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결산서 분량도 1천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이고 체계도 복잡하다 보니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을 파악하거나 견제하는 데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 살림살이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율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산서와 회계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이해하기 쉬운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 의미가 잘 통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회계용어를 순화하고, 용어해설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회계용어의 순화는 국립국어원의 협조를 받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재무제표 검토서 표준양식의 '증대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과 같은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문장표현도 개선한다. 회계용어 해설집은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지방재정 365'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가칭)회계용어챗봇'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산서를 간소화한다. 현행 24종의 결산서 첨부서류를 결산서와 연관성이 큰 정보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복되는 서식은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간소화한 결산서라 할지라도 주민에게는 여전히 복잡한 회계명세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핵심정보만을 요약하는 주민용 결산보고서를 작성·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지방정부 대부분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민용 보고서(PAFR, Popular Annual Financial Report)와 같은 쉬운 내용의 요약보고서와 같이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내용만으로 쉽게 작성하도록 하고, 행안부가 공모를 통해 잘 만든 주민용 보고서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며, 또한 담당 회계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유용한 재무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령에서는 2014년부터 도입한 회계 직류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전면 개정

2008년 제정된 이후, 10여 년 이상 단편적으로만 내용을 수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규정의 중복과 오류 등을 정비하고, 재무회계담당자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활용이 편리한 매뉴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무회계담당자가 하나의 회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와 목적 규정을 확인하고 회계처리의 예시와 주의사항, 재무회계과목 총괄표(COA)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한다는데 차안하여 현행 규정 체계를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일치시키고, 현행 개조식의 표현방식도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또한, 각 장·절마다 참조나 인용이 가능하도록 본문의 번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각종 사례도 풍부하게 보완된다.

3) 결산검사와 재무제표 검토의 실효성 확보

결산검사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검사 매뉴얼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위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재무제표 검토서의 형식적 검토에 그치는 것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재무제표 검토 용역의 보수기준을 예시하는 것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이후에는 현재 20여 일에 불과한 재무제표 검토 기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 검토자의 선임 시기를 해당 사업연도 중으로 앞당겨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재무제표 검토자를 선임하는 관행으로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실질적인 검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 원가회계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준칙안'을 제정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내에 원가회계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3년 결산부터 본격적으로 원가회계를 운영하였으나, 원가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별 원가정보를 비교하거나,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계열적인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한편, 2010년부터 원가정보 중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사업의 일부에 대한 원가공개를 시작하여 점차 확대를 추진하여 지난 2015년부터는 지

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사·축제예산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시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개최하여 매년 14%p 이상 증가되던 행사·축제사업 집행액 규모도 9%대의 증가율로 감소(광역지방자치단체 5천, 기초지방자치단체 1천만 원 이상 규모 행사·축제의 경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행사·축제사업원가 이외의 일반 사업의 원가정보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에 재무회계를 도입한 목적이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들과 같은 지방 회계 정보의 이용자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예산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비교 가능한 원가 정보로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가진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에 표준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비교 가능한 원가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의 원가 표준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야 중 비중이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세부사업 단위에서 급여형태·급여대상·개입수준 등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 1인당 원가정보, 영유아 1인당 원가정보 등을 산출하여 비교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위임·위탁의 형태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비용·수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단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유용한 원가정보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5) 지방회계통계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한 정책 및 통계 품질 제고

지난 2017년 2월, 행정안전부는 고시를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2016년 설립 이래, 2017년 조직과 인력 정비를 마치고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국내외 지방 회계기준 등 지방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를 활용한 재정분석과 통계관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지방 회계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재정통계 운영·관리에 있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송부받아 공무원들의 합동 집무를 통해 정리하던 과거의 통계수집방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정

보를 행안부가 전자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 회계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객관적 통계 산출과 통계 오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의기구인 「(가칭)지방회계통계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 관련 정보와 e호조 연계를 추진하게 되면 재정통계의 품질은 한층 향상되고 재정분석의 기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재정에 관한 권한이 확대될수록 회계 책임의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내부통제를 보강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도 재정운영 참여 욕구가 커지는 주민의 견제에 대해 당당하고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하여 각종 의사결정과 정책에 활용됨으로써 통계정보로서의 효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결산제도가 주민의 요청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4. 지방계약제도

가. 그동안 성과

그간 지방계약제도는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을 제한하였으며, 민간이전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재해복구 사업의 개선계약 및 단가계약제도 도입, 긴급 방재사업의 신속한 계약 추진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였고,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의무화, 지방 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사전규격 공개제도와 지역배상금 감경 등을 시행한 결과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실적 제한 입찰제도의 개선과 적격심사의 실적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입찰참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최저가제도를 폐지하여 계약상대방이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절감과 용역결과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다.



나. 2018년 추진계획

1)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제척기간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지방자치법」에서는 입찰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 부정당업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실이 있은 후로부터 기간이 상당히 도파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처분을 할 수 있는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 사유를 야기한 업체는 처분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면허에 대한 영업정지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형법에 따른 형벌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류 위변조나 부실 계약이행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처분권자는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담합이나 금품제공 등 발주기관이 직접 밝혀내기 어려운 사유의 경우 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 등과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정보파악 강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고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재산등록 등 현재 관련 행정기관이 제출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대상자의 파악이 어려워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가족관계와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이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 확대

공공조달은 업체 간 견전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물품·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이 어렵거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한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서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본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나, 상이군경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서비스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발주기관의 재량 하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확충을 위하여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의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을 그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판로지원이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타 영세업체와의 형평성과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동 제도개선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시킬 계획이다.

4)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발주 규모를 고려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개정하여 지역 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그동안 동 금액의 공사를 설계부터 업체가 수행하여 평가하는 일괄·대안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러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 중견업체보다는 대형업체 위주의 낙찰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괄·대안 입찰에 적용되는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하여 우수한 지역 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동 제도개선은 중견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5)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지방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은 대개 격격십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격 외에 품질과 규격 등 비가격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사안에 대하여도 조달청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용했던 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발주기관이 계약을 진행하되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물품(관복, 학교 교복 등) 발주에서 입찰질서가 훼손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등 지방계약에서의 독자적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다양한 물품 중 해당 기준을 적용할 대상 품목을 전수조사하고 평가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마련된다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입찰질서를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6) 자치단체 예산 절감 추진

그간 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계약심사제도¹⁾의 경우 그간 제도 및 조직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년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여 신규 사업에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 보전 및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예산 절감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사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심의건수	49,324건	48,352건	52,798건	60,800건
심사요청액	23조 6,384억 원	21조 9,734억 원	23조 5,068억 원	27조 6,117억 원
절감액	1조 2,332억 원	1조 321억 원	1조 1,211억 원	1조 1,877억 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계약 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5. 공유재산 관리제도

가. 그동안 성과

공유재산과 관련된 최근의 행정환경은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 가치 증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의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2017년에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공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그 동안의 유지·보존에 중점을 둔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의 활용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제도를 몇 가지 살펴보면,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맞추어 푸드트럭 모집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에 따라 우선 대상자 등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영업장소에 대한 지정 및 관리는 물론, 청년과 저소득층 등에 우선권 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과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관심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한 수의매각 조건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등으로 완화하므로 유휴 공유지 개발 및 활용도를 제고하며, 그동안 기부자의 기부 재산에 대해 전대 시 기부 시점에서만 전대(재임대)를 허용하였으나, 앞으

로는 기부채납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부자가 무상사용 기간 중에는 언제든 전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건립 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건립 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우대요소(지역영향평가대부제 입찰평가 시 가점 부여) 등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내용 등은 2017년 5월 경주에서 개최된 공유재산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TF 등을 통해 오랜 토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진 것들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2018년 추진계획

1)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물품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법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방법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단일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과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 또한, 법명을 국가와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재산'과 '물품'으로 각각 분리하여 객체 또한 분명히 하였다. 지방 재산과 물품의 개별적인 법령마련을 통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방 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유휴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휴 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지 확보 및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대규모 또는 소규모 위탁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규모 충전소 위탁개발은 대도시 중심가에 대규모 충전소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수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여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으로 2018년 1월 현재 창원시 등 6건의 위탁개발 사업 계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소규모 충전소는 전국 국도(지방도)변 및 공영주차장 등에 개방형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유휴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정책지원은 물론 주차장 부지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3) 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 설립추진

공유재산은 공공성 및 공익성은 물론, 수익재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찾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소수의 재산담당자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대체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공유재산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각계 전문가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적극적 관리는 물론 위탁개발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금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안을 통해 전문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기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강화를 통해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누락재산 파악 및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담당자의 관심소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와 변상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하여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위탁관리 업무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 실무자 간담회 등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유재산관리 정보화 시스템 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단체 실무자들과 함께 연구·토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관리 방안 등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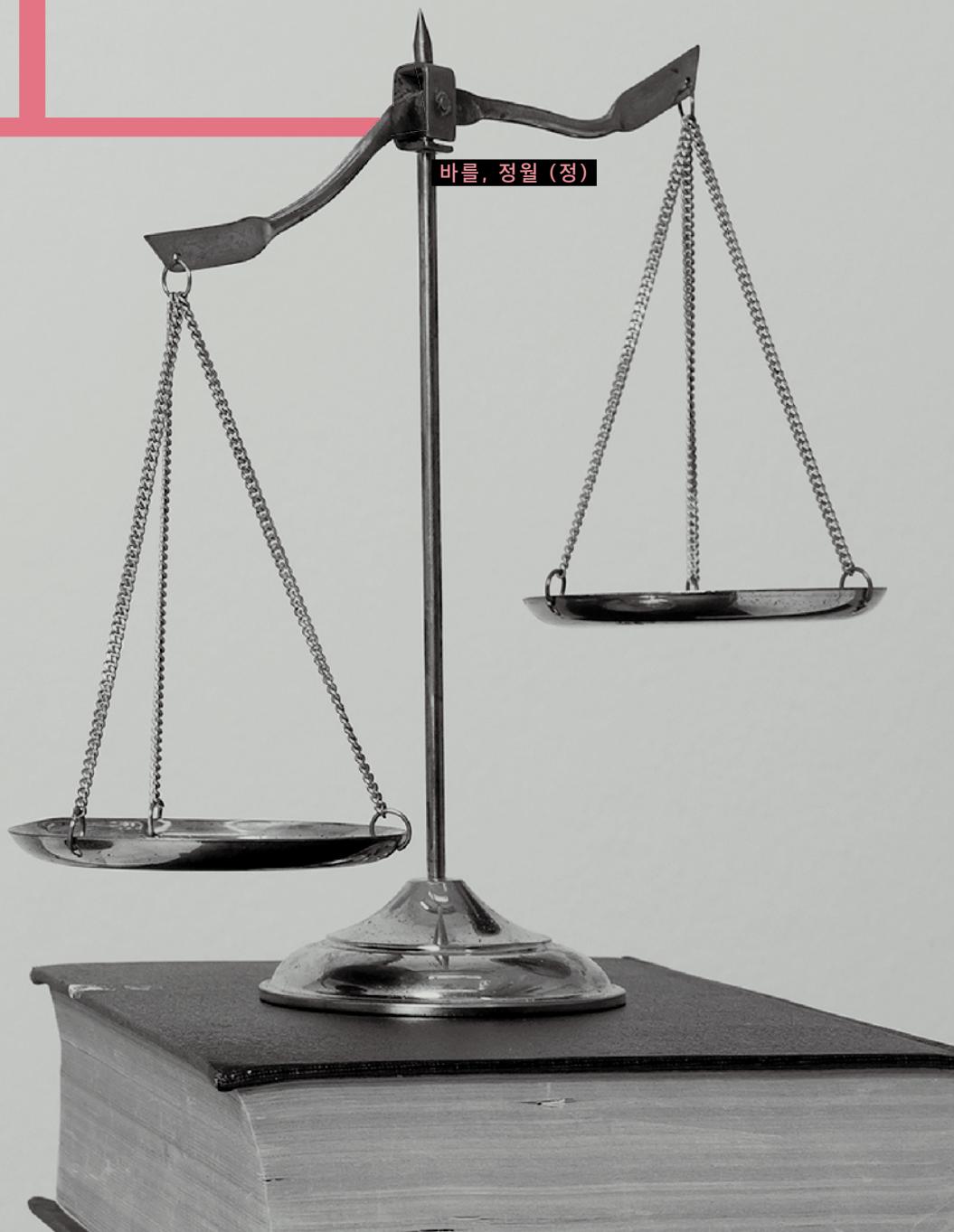
III. 맷음말

지난 한 해 회계·계약 및 공유재산 업무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개발 등을 추진한 결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야는 최근 5년간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률과 집행액의 최고치를 달성하는 한편, 지방 회계·결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 재정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였고, 지방계약분야는 창업·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소규모 물품 용역 입찰에서의 실적 제한과 물품구매 입찰 시 적정 단가 보장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등을 폐지하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등을 통해 지방계약제도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분법 추진과 함께 공유재산을 활용한 전기차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하였다.

올해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속집행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회계 책임성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등 예규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화 추진 및 유류 공유재산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정책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다.

바를, 정월 (정)



재정의 [올바른]

정도[正道]를
이야기
하다.
에
대해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다. 그렇게 이어져 온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든든한 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탄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지방재정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더불어 올바른 지방재정의 운용 및 관리를 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역할의 중요성과 범위 또한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변화된 정책의 운용, 정책 실행 현장과 사례, 국내외 각종 재정 이슈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정도(正道)에 맞게 이뤄진다면 성공적인 지방 분권도 가능하다.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활동을 통해 돌아보자.

글 지성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협력팀

보완 천민정
대통기획 기획팀장

사진 장태규
마주스튜디오

표준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원가, 「서울형품셈」으로 바로잡다

**2017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서울특별시 본청 계약심사과**

서울시는 ‘서울형품셈¹⁾’을 통해서 2017년에 52억 원 등 총 5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앞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검증과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서울시. 이런 노력을 통해 서울형품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국 계약심사모델의 표준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이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간의 개발 노하우를 듣기 위해 국가대표 계약심사 전문가, 서울특별시 본청 계약심사과를 찾았다.



계약심사 분야에 있어서, 서울시 본청은 누구나 인정하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표준품셈에 없는 특수 공종 등에 대한 자체적 품셈인 ‘서울형품셈’을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3년부터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에 앞서 원가산정이 적정하게 검토됐는지 평가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선진적으로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계약심사제도의 핵심은 정확한 품셈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분야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공종과 공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정부 표준품셈은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품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형품셈은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품셈법을 개발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이를 통한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매우 큰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 표준품셈이 반영하지 못한 건설공사 분야의 기술혁신

우수사례가 된 서울형품셈의 탄생 스토리를 듣기 위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의 어느 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를 찾았다. 쌀쌀한 날씨와 달리 서울특별시 서소문 청사의 계약심사과는 치열한 토론과 업무 열정으로 분위기가 뜨거웠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으며, 항상 계약 심사 분야를 선도해 왔습니다. 우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가 계약심사의 개별분

1) 품셈 : 건설공사에서 단위 공종별 소요되는 인력의 품(노무량)을 셈한 것(건설품셈 등 4종) 저자 주



(뒷줄 왼쪽부터) 김민정 주무관, 김소연 주무관, 양순옥 주무관, 김태극 주무관, 박형준 주무관
(앞줄 왼쪽부터) 정대진 주무관, 최주용 팀장, 횡문연 주무관, 나영탁 주무관

야에 있어 국가대표선수라고 할 만합니다.”

안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장은 서울형품센의 대통령상 수상은 단지 2017년 한 해 동안 잠시 열심히 해서 받은 깜짝 성과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제도 분야 공무원 전부의 끼거라고 말하면서 말을 이었다.

“계약심사는 기본적으로, 공사원가를 측정하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품셈이 기본이 됩니다. 즉 품셈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이지요. 그러나 건설공사 분야는 지금도 새로운 공법과 공종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인력 중심에서 기계화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시공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 표준품셈이 반영하지 못하는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대진 주무관은 서울형품센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 분야 공무원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계약심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님께서 2012년 3월에 서울형품센의 지속 개발과 원가 절감 추진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2017년 3월에 5년여 동안 개발된 80건의 품셈 중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64건을 선정했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품센을 발간해 계약심사의 체계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품센(LED) 개발 프로세스>



정부 표준품셈은 70년대 초 제정 이래 30년 이상 그대로 사용되는 공정이 많아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대로 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설자재의 소형화·집약화와 신기술·신공법 개발로 기계화·자동화가 보편화되고,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있지만 정부 표준품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 주무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품셈 관리주체가 민간기구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 품셈을 관리하는 조직과 예산이 선진국보다 많이 열악하다는 점, 그뿐만 아니라 시공사 등 이해 관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제·개정되어 원가를 부풀리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정 주무관의 설명에 최주용 설비심사팀장이 말을 덧붙인다.

“일본의 경우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성이 주관해 3년마다 품셈 전 항목에 대해 현재의 공법과 비교 분석해 공량의 증감을 조사하는 등 주도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표준품셈이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아직도 정부 표준품셈에 설치비 산정 기준이 없어 제작사의 설치비 요구 단가를 전액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대당 약 3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연 4만 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서울형품셈이 정부 표준품셈으로 등재될 경우, 연간 약 1천 2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민·관 협력프로세스를 통한 품셈 개발의 정밀성 확산

계약심사과 정대진 주무관은 서울형품셈 개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품셈 연구 동아리 활동, 시공업체 합동 현장실사, 민·관 거버넌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밀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LED 관련 서울형 품셈의 경우 개발과정은 총 6단계로 ①품셈 개발 대상 선정 ⇒ ②자체 연구동아리(2개) 품셈 연구 ⇒ ③외부기관 합동 현장실사 ⇒ ④품셈(안) 개발 ⇒ ⑤전문가 참여 원가조정 거버넌스 개최 ⇒ ⑥품셈 확정 및 전국 확산 순으로 진행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은 “서울형품셈 개발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계약심사) 외에 부수적인 창의적 연구 활동을 통해 산출되므로,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서울시는 담당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2회 전 직원 워크숍,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품셈 개발의 필요성 및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동아리 활동을 연계해 품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주용 설비심사팀장도 서울시에서는 품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을 전문직위(전문관)에 임용해 인사상 인센티브(성과급 우대, 수당 지급)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서울형품셈의 개발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적정원가 R&D 연구회’(건축·설비분야, 16명), ‘클린품셈연구회’(토목분야, 10명) 등 2개의 직원 연구동아리를 구

正



"매년 2회 박원순 시장님 주재로 서울시 건설회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형 품셈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해 품셈 연구·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16년·'17년 연속으로 서울시 창의동아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정부 표준품셈에 등재된 LED 품셈은 담당 공무원의 자발적 열정이 이끈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풀센 개발과정의 시공사 참여를 통해 공사원가 절감에 따른 반발 예방

품셈 도입과정에서 시공사들의 반발은 없었을까? 정대진 주무관은 시공사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품센 개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시공사는 대체로 공사 원가가 절감되는 품센개정에 비협조적인 편이죠. 이런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실사에 건설업계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품센 개발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가 조정 거버넌스를 개최했습니다.”

정 주무관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실사와 원가 조정 거버넌스를 떠올리며 안호과장이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매년 2회 박원순 시장님 주재로 서울시 건설회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형품센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리 서울형품센에 따른 건설업계 반발 등의 장애를 예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주용 설비심사팀장은 2017년 9월에는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서울 도심 내 할증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서울형품센 개발’을 건의해 이를 반영한 품센 개발을 연구하는 등 서울형 품센 개발과 적용에 따른 환류 체계를 운영했고, 건설업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형품센이 선도하는 놀라운 재정혁신

2017년은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됐다. 놀라운 쾌거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낸 기적의 시간들. 발간된 품센을 재정비해 서울형품센집을 발간하고 계약심사에 적용한 결과, 2017년 8월 기준으로 52억 원의 공사예산을 절감하는 등 2012년 이후 최고치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에는 LED 등기구 관련 3건의 품이 정부표준 품센에 반영돼 전기공사협회 추산으로 전국에서 약 87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8월에는 국토부에 서울형품센 내용을 정부표준 품센에 등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야 말로 정부 정책을 서울시가 오히려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서울형품센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등의 공사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덕분에 2017년 5월 국민대통합위가 주관한 ‘갈등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서울형품셈을 활용한 사례의 우수성을 입증 받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부산, 울산, 충남,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서울시를 방문해 서울형품셈 개발·활용사례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저희의 연구성과를 같은 공무원 동료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만 애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 계약심사과의 동료들이 ‘내가 이 분야의 국가대표다’라는 생각으로 애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신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도 크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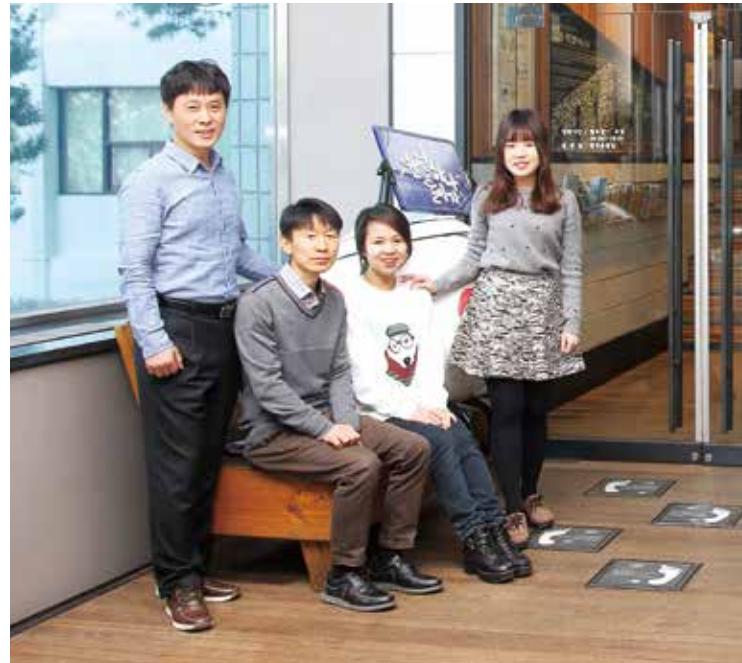
정주무관은 그 당시를 떠올리며 기쁘게 웃음 지었다.

2018 서울형품셈

2018년에도 서울시 계약심사과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된다.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먼저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개발된 86개 서울형품셈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증에 나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은 “외부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품셈을 재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품셈 증보판을 발간해 전국에 확산하고자 한다”며, “또한, 올해 5개 분야의 8개 공종 개발을 목표로 계약심사과 전문관과 연구동아리 등을 활용,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 등을 반영한 서울형품셈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서울형품세를 보며 의견을 말하고 있는 정대진 주무관



또한 서울시는 공사 성격이 있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10억 원 이상의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정원가를 산출할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 검토를 병행해 물품의 가치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 기준 대비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심사대상 범위도 완화할 계획에도 착수했다. 불필요한 심사 첨부 자료를 줄이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유사사업 일괄신청 시에는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된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해 실시한다. 심사 기간을 단축해 사업발주가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계약심사과에는 심사 검토를 앞둔 관련 서류가 가득 쌓여 있다. 개별 심사자들은 전문가로서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완벽한 검토는 없다고 믿기에 보다 세심하게 완벽을 기하고, 오늘의 나를 반성하는 계약심사과 담당 공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열정에 탄복이 절로 났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의 업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들이 써나갈 업무 행정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또 한 번 기대해본다.



「서울형 품셈」은 2017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숫자로 보는 성공 프로젝트

서울시청 재무국 계약심사과 ‘서울형품셈’


2003년

정부 표준품셈으로 원가 절감 노력 시작

서울시는 ‘정부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앞서 원가산정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순회교육

서울시는 ‘서울형품셈’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언론홍보는 물론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30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

2,030명




506억 원

‘서울형품셈’ 누적 공사비 절감

서울시는 계약심사를 통해 2011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8,920억 원의 공사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 중 ‘서울형품셈’을 적용한 공사비 절감은 506억 원에 이른다.



64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품셈’ 발간

건설 분야는 새로운 공종 및 공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시공기법도 인력 중심에서 기계화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제때 반영되지 못해 공사원가가 부풀려지는 등 계약심사의 어려움을 겪었고, 2011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개발을 시작, 그동안 개발된 80건의 품셈 중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64건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품셈’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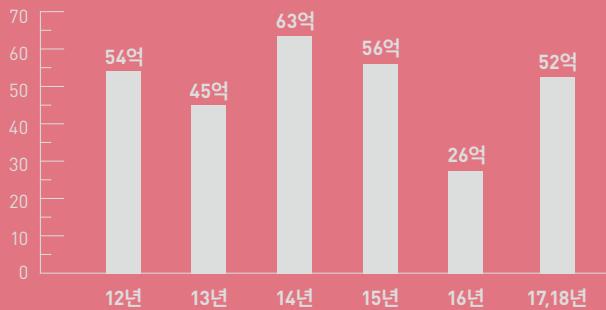
26명



직원 연구동아리 연구회

서울시는 ‘서울형품셈’ 개발 시 시공업체 합동 현장실사와 민·관 거버너스 운영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서울형품셈’의 개발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적정원가 R&D 연구회’(건축·설비 분야, 16명), ‘클린품셈연구회’(토목 분야, 10명) 등 2개의 직원 연구동아리 26명을 구성해 품셈 연구·발굴을 진행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16년과 ’17년 연속으로 서울시 창의동아리상을 받았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서울형품센’. 지금의 ‘서울형품센’이 탄생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서울시청 재무국 계약심사과가 있다. 건설 현장 변화와 외부 여건 분석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계약심사의 실효성을 높인 ‘서울형품센’ 탄생과 그동안의 노력, 발전 과정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살펴보자.



52 억 원

2017 ‘서울형품센’ 공사비 절감

서울시는 2017년에 그동안 개발된 품센을 재정비해 ‘서울형품센집’을 발간하고 계약심사에 적용한 결과, 8월 기준으로 52억 원의 공사예산을 절감하는 등 2012년 이후 최고치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서울형품센’ 민간분야 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서울형품센’은 2015년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에서 희망할 경우 아파트 건설 공사의 원가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9개 사업에 대해 1,478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78 억 원



16.11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인사혁신처 주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서울형품센’을 활용한 사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87 억 원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서울시가 ‘서울형품센’을 정부 표준품센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15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총 6건이 반영됐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17년 1월 LED 등기구 관련 3건의 품이 정부표준품센에 반영되면서 전기공사협회 추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87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7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자체 품센인 ‘서울형품센’은 이를 활용한 계약심사 사례에 대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부산, 울산, 충남,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서울시를 방문해 서울형품센 개발·활용사례를 벤치마킹했다.

4 개



2017 지방재정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자립도 꼴찌의 노하우로 자체세원을 발굴하다!

step1. 추진 배경

적극적인 토론풍화로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 연구

남원시 예산구조는 의존재원 90%와 자체 재원 10%로 전국 자치단체중 최하위이며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남원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14년 예산동아리가 탄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투자는 증가하고 특별한 세외수입원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남원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살림 연구, 세입확보 및 세출절감 운영, 부자남원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창출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에 귀농귀촌 봄을 일으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예산동아리 회원들이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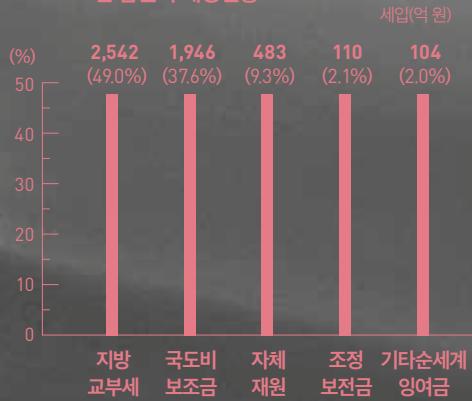
온새미로(예산동아리)는 ‘건전재정운영 도전은 계속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남원시 재정살림 연구, 예산효율화 아이템 개발, 지방예산조정제도 대응, 세입확보·세출절감 운영, 예산소통 부자남원 만들기를 5대 전략목표로 삼아 적극행정을 수립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끝없는 열정과 소통으로 뭉친 ‘예산동아리 온새미로’

예산동아리는 당초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65명의 회원들이 3개의 팀으로 구성된 예산혁신단으로 출범했으나, 인원수가 많고 회의 한 번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등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 2017년 온새미로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만으로 대폭 조정(13명)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전국 자치단체 세외수입 분석으로 1원이라도 찾아 세외수입 확충

온새미로(예산동아리)는 열악한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숨어 있는 세월을 찾아려고 2017년도 세외수입을 분석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결과물이 나와 자주재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동아리(온새미로)의 강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파악해 예산동아리의 토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오고 있다.



step2. 제안 배경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 지출 및 식품안전성 등의 문제 대두

남원추어탕은 상표법상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결합한 브랜드로, 상표권에 등록할 수 없어 누구나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남원추어탕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아무런 품질관리 없이 벼젓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남원추어탕 레토르트(즉석식품) 판매업자는 ‘맛있는 남원추어탕’과 같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산 미꾸리 종묘는 자연 채취해 한국까지 반입하는데 15일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송 과정에서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항생제 및 살균제를 대량 투입,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동아리에서는 웰빙 문화 확산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으로 2012년 4월부터 추어탕 업소 미꾸리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토종미꾸리를 사용하는 남원추어탕에는 미꾸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토종미꾸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했다.

지역브랜드 활용방법을 찾자! '적극행정 아이템 개발' 토론

최근 가정의 변화는 1~2인 가구, 맞벌이 부부, 고령화, 캠핑증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어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전국에서 유명한 추어탕을 소비자에게 쉽게 제공하는 프로젝트(레토르트/즉석식품)를 구상해 세외수입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연구를 실시하게 됐다.

남원 대표음식 추어탕



step3. 제안내용

재정자립도 꿀찌! 어떻게 하면 남원도 잘살 수 있을까?

{ 남원 대표음식 추어탕을 브랜드화 하여 대기업에 건의하다 }

남원의 인구는 85천 명으로 아주 작은 도시이며, 재정자립도가 꿀찌라서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자치단체다. 이에 예산동아리에서는 지역브랜드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남원추어탕’이라는 브랜드를 대기업 상대로 여러군데 제안하고 접촉했으나, 역시 대기업의 벽은 높고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요구사항을 분석해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 방문한 결과 '(주)이마트'를 통해 남원추어탕을 공동 개발하고 전국 최고의 맛 즉석식품(레토르트)을 판매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 기업체와 업무협약으로 자주재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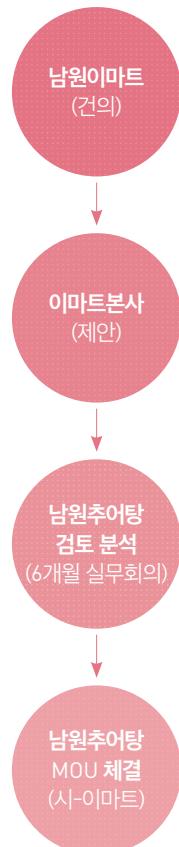
{ 세일즈 행정! 지역브랜드를 활용한 예산동아리의 적극행정 결실 }

- 국내산 미꾸라지를 남원식으로 만든 추어탕(레토르트) 개발·판매
- 역할 · 남원시: 원료제공(미꾸라지 및 시래기 등) 및 브랜드 제공
· 이마트: 남원추어탕(PB 상품)개발 및 판매

<남원시, 이마트 제안 흐름도>

emart

※ 이마트 남원추어탕 판매액의 로얄티 3%를 남원시에 지급





예산동아리 모임 회의 장면

step4. 장애극복

식중독균 등 발생 ‘시청 이미지 훼손 사업부서간의 의견 충돌’

예산동아리 모임에서 가정 간편식인 레토르트는 현대사회의 식사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시 홍보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좋은 아이템을 제시했으나,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식중독, 품질검사 등 문제 발생 시 시의 이미지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예산동아리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식중독균, 품질검사 등 문제점을 기업체에 전달했다. 기업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문제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이마트에서 지기로 약속해 적극 해결했다.

관내 추어음식점 ‘반발과 생산증단으로’ 최대위기 극복

‘남원추어탕’을 이마트와 공동 개발·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관내 추어음식점 대표들의 거센 항의와 남원추어탕이 대기업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며 사업추진이 보류됐으나, 남원추어탕의 공동 개발·판매에 따른 주원료인 미꾸리와 시래기의 대한 농가소득, 추어발전기금, 남원홍보 마케팅 등으로 지역소득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집중 홍보해 추어음식점 대표들을 설득하게 됐다.

남원추어탕은 소비자의 선풍적인 인기를 받으며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다. 안정적인 품질관리로 출시된 남원추어탕이 세균발육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서 수 천개의 제품이 회수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제품은 식품유형표시에 레토르트로 되어있어 살균처리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최장 1년)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어 판매수입이 보장된다. 그러나 살균처리를 하면 한 가지 큰 결점이 있다. 바로 맛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맛있는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 살균처리보다 낮은 단계인 멸균처리를 선택했다. 비록 유통기한(3개월/냉장보관)이 짧지만 남원추어탕의 명성을 살릴 수 있는 맛을 선택한 것이다.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한루원

step5. 주요성과

창의적인 행정으로 세외수입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자치단체 최초로' 남원시-기업체 업무협약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농수산물을 남원산(미꾸리, 시래기)만 사용 협약으로 고소득 창출을 창출했다.

- 무청 시래기, 남원산 미꾸리 : 지역 농가소득과 일자리창출
- 이마트 남원추어탕 판매금액의 3% : 남원시 세외수입 확충

남원추어탕 홍보에 따른 귀농귀촌 효과 톡톡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추어의 거리, 요천을 홍보하고, 남원 1박 2일 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남원이야기를 접하여, 도시에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남원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남원시는 귀농귀촌을 연간 5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추어탕 홍보효과와 춘향애인의 농산물 우수성에 대한 이미지에 힘입어 2016년 말 1,084명이 귀농귀촌을 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자치단체에 전파

자치단체의 지역브랜드를 『기업체 ⇌ 자치단체』 업무 협약

- 자치단체 : 브랜드제공, 농산물 원료 제공 등
- 기업체 : 상품 개발 및 판매, 브랜드사용 수수료 지급

Tip. 보도자료(언론)



로알티 업무협약 체결



적극행정 업무추진



남원추어탕 홍보



우수사례 기고

正

5분 발언대

글 편집실

사진 박용진 마주 스튜디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심이 필요할 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이런 협동심을 잘 발휘하려면 힘을 모으는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야만 한다. 결의 사람이 제 몫을 발휘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리라 믿을 수 있어야만 나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 뜻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협동을 위한 개인의 자립심은 필수이다.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자립(自立).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를 지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이라는 자립을 해내야만 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평가만으로도 의미 있는 ‘2017 우수 단체’ 시상

지난 3월 16일(금),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천안(天安)에서 행정안전부 주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이 제도는 민주적인 지방재정 편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듣는히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토론회가 열리는 천안시청은 시작 전부터 관계자와 참여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바람은 쌀쌀했지만 제법 훈훈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씨 덕분에 토론회장을 둘러보는 시민들의 웃차림과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밝고 가벼웠다.

토론회는 국민의례 후 2017년 우수단체 시상식부터 시작했다. 사례발표나 반성에 앞서 한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자체를 선발하고, 그 노력을 가장 먼저 인정하며, 독려하는 배려가 돋보이는 현장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했다. 평가는 주민참여예산 비중, 주민참여 기구 구성 및 운영,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실적 등 정량 평가와 참여절차, 주민대표성, 투명성 등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를 반영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나주시 등 광역 지자체 2곳, 기초 지자체 13곳 등 총 15개 지자체가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올라 감격의 기쁨을 나눴다.

구본형 천안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제도”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런 자리를 통해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건넸다.

행정안전부의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선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으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15개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토론회는 재정분권 실천덕목 가운데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각 관계자 분들의 역할과 과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논의하는 자리이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



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서비스 전달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축사를 전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우리 단체만의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

우수 지자체 시상식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토론회장은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서울특별시 최인욱 시민참여예산팀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시민제안의 적극적 예산 반영과 참여예산사업 결정 시 모든 시민의 직접 투표 등을 강조하며, 제한 없는 시민참여와 시민주도 운영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생활 편의 맞춤형 역점과제 선정을 통해 공감대를 끌어내고 주민참여까지 유도하는 운영 사례를 소개해 주목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사례 발표 뒤 이어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의 지자체 유형별 운영모델 연구결과도 토론회를 찾은 관계자와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브라질 알레그레 시와 참여포럼을 진행하는 스페인 알바세테 시 사례 등의 해외 사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비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현재 모델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모델 비교와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 두 가지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다양한 주민참여 예산범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양극화, 도농형 지자체의 열악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여건,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의 업무 과중 등의 특징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형별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도시형 광역단체 모델, 도시형 기초단체 모델, 도농형 광역자치단체 모델, 도농형 기초단체 모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정섭 박사는 해당 모델은 기본적인 것으로 반드시 모델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와 자치주민의 특성에 맞춰 유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해당 지자체만의 맞춤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각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상적인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매년 우수단체 평가를 진행해 우수사례 발굴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스스로 빛나는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 시간에는 본격적인 평가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토론에는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배인명 교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 행정안전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최인욱 팀장,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

설의 박충훈 실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배정아 교수,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김숙자 분과위원장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은 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양극화된 운영 모습과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현실 행정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야기로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모이는 것이 어려워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김숙자 분과위원장의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크게 와닿은 듯 했다.

시스템이나 예산 범위, 운영 방식 등 제도적인 부분의 결핍과 보충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접 참여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인식 결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박약 등 정서적인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토론자들은 이런 개선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변형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토론을 마쳤다.

지난해 새 정부는 5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에 주목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그 속의 시민 또는 도민, 그 안의 구민 또는 주민의 삶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활성화 되려면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운용돼야 하고, 지방행정을 움직이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지방의 자치도가 상승하며 지자체 스스로 자치주민을 위한 행정 수행이 가능해진다. 더 섬세하고 적합한 행정 수행은 자치 주민의 민족도를 높이고,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행복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작은 작지만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미래, 각자가 그리는 미래를 목표로 스스로 빛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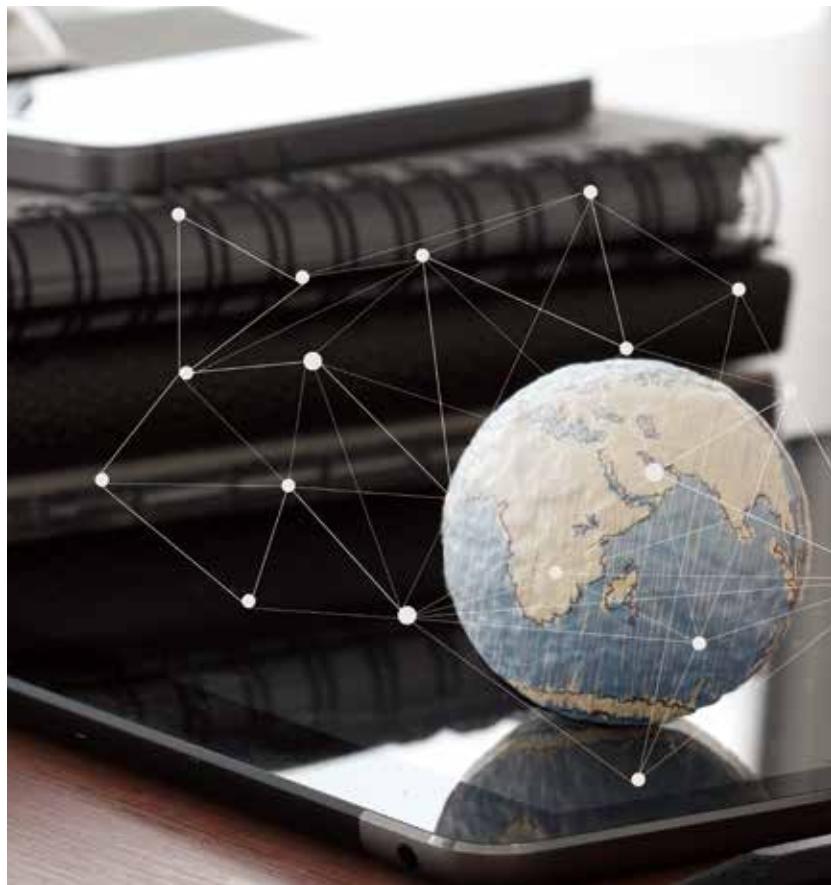


正

지방재정 대내외 이슈

Issue 1 지방재정 대내외 이슈

국내·외 지방재정 동향



우리나라 경제 지표

구분	금리(국고채3년)(%) 한은 기준 금리(1.25)	주가(KOSPI)	소비자 물가지수	원/달러환율(₩)
2018.02	2.28	2,520.94(1월)	104.260	1,080.70
2017.12	2.10	2,467.73	103.04	1,085.95
2017.09	1.79	2,371.84	103.59	1,132.93
2017.06	1.67	2,372.20	102.67	1,131.62
2017.03	1.71	2,136.17	102.79	1,133.95
2016	1.44	1,987.00	100.97	1,160.41
2015	1.79	2,011.85	100.00	1,131.52
2014	2.59	1,982.16	99.30	1,053.1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연·월 자료는 기간 중 평균)

자료 수집 :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2018. 1. 9. 기준

Issue 2

국내·외 지방재정 동향

국내 정책 이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자료 : 행정안전부(201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보도자료(02.13)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기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목),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그동안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에 따라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인 부정수급 적발·감시 방안이 포함됐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먼저,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된다. 보조금감사팀은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여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상위 기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 별로 구성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상향해 주민 신고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분	현행(지방재정법)	개선(「(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공개 항목	교부현황 / 성과평가 결과 / 중요재산 취득·변동 /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기준 공개 + 실명제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정보공개) 교부 / 평가결과 / 재산 / 중요처분 등 - (실명제) 보조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명단 공개 - (명단공표)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표 <p>•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정보 공개 신설</p> <p>-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지적사항, 감사 관련 보고서, 재무제표 등</p>

이와 함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와 각종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보조금 정산결과와 보조금 감사팀의 활동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 연도 보조사업 및 일몰제 심의 등을 하게 되며, 보조사업 전반의 환류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이 신설될 경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의 과세, 재산 정보 등을 알기 어려워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비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안)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전 심의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 전 심의 •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 기능 + 부정수급 환수결정심의 + 보조사업 일몰제 심의 등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 증빙을 통해 용도 외 사용 여부 등도 손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의 대책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설계를 거쳐 2019년에 시스템을 구축·시범 운영한 후 202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사·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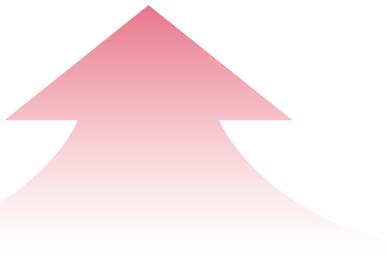
<POINT! 간단히 살펴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차상위 기관의 보조금 점검·관리 기능 강화

-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보조금감사팀 신설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주기적 점검 실시

- 보조금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상시(필수)감사 강화 및 다각적 특별감사 실시
- 차상위 기관(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국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 권한 부여하는 근거 조항 신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주요 내용>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추진과제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상시 감사 강화 ②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 ③ 차상위 기관에 점검·감독 권한 부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①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고·감시 강화 ③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및 활성화 ④ 정보공개 강화 및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② 관련정보의 수집·활용 근거 마련 ③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도기반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제정 추진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 구성,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도 실시
-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적극적 활동 유도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 원에서 국가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상향 추진
- 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구분 편성하도록 유도 및 확인하고, 현 공시 정보 외에 공개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조항 신설
- 현 공시 정보 외에 공개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조항 신설

체계적 보조금관리 강화

현행 지방재정법 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환류 체계를 강화. 이에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 - 보조사업자 -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가칭)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할 예정

Issue 3

국내·외 지방재정 동향

국내 지방재정 이슈



LOFA

서울시 노원구, 블록체인 '지역 화폐 노원(NW)' 개발

출처 : 아주경제 2018.01.18



서울시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 화폐 노원(NW)'을 개발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용이 기록되는 공개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노원구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지폐나 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던 지역 화폐를 대신 해 운영할 예정이다. 노원 지역 화폐의 기본 통화 단위는 노원(NW),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 NO_WON의 약자이다. 노원구는 자체 개발한 운영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및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창출된다. 1노원은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스마트폰 스토어를 통해 '노원 지역 화폐'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 지역 서점 활성화 '서점 상품권' 제작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8.01.28

경기도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지역 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점 상품권'을 제작할 계획이다. 서점 상품권은 도내 지역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빠르면 3월 즈음 5만 장가량 발행될 예정이다. 서점 상품권은 5천 원, 1만 원권 두 종류로 발행되며, 도내 31개 시·군 지역서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포상 지급 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 개발

출처 : 뉴시스 2018.02.03

서울시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으로 위치 정보, 시설물별 분석, 실시간 등록과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별로 분산 관리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정보관리나 공유를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자전거 도로 노선을 지도 위에 표출하는 것은 물론 여러 노선을 중첩해 볼 수도 있고, 어린이보호 구역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등과 같이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정보 또한 함께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스템 활용 시 고가의 전자지도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무료 지도 오픈 API를 연계해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으며, 실시간 교통상황 및 로드뷰를 연계한 자료 관리기능도 제공해 직원들의 공공시설물 관리의 편의성을 더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시스템 개발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출처 : 한국경제 2018.02.09

경기도 용인시가 올해부터 관내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용인시에서 올해 중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1만 1,000여 명, 고등학생은 1만 2,000여 명으로,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총 2만 3,000 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소요 예산 68억 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1인당 29만 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내 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관외 학교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학생의 주소와 입학 여부 확인 후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택시 환승제·운행정보 전송체계 도입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2018.02.11



인천광역시가 올해부터 심야 시간 택시 환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운행되는 심야 시간 택시 환승제는 심야 시간 전철 등 대중 교통 이용 후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택시환승제와 더불어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택시 근절 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

터기 정보를 실시간 전송·분석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인 택시 5,385대에 택시 내·외부 영상과 음향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도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군, '안전신고 포상금제' 시행

출처 : 경남신문 2018.02.13



경남 거창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특히 최근 전국에서 계속되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내달부터 1,300여 건의 시설물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380여 명을 동원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전력하고 점검대상지 중 위험도가 높은 43개 시설물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사유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신고문과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선정 방법은 접수된 신고 중 처리 부서에서 수용된 신고에 한해 신고 건수가 많은 순으로 이뤄지며, 초중고생 신고 1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인정 기간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기간까지 총 10시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은평구, 토지 고저·경사도 분석 시스템 개발

출처 : 신아일보 2018.02.25

서울시 은평구는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해취약지역 분석에도 필요한 토지 고저·경사도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토지의 고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필수 항목으로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28년간 담당 공무원의 육안에 의한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전수조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도 고저에 대한 객관적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토지의 고저가 달리 조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국가 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와 수치표고모형(DEM), 연속지적도, 도로명 전자지도,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금까지의 조사 방식이었던 사람의 육안에 의한 판단 없이도 토지 고저·경사도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은평구는 시스템 개발이 업무의 효율성·정확성 증대는 물론 구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면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Issu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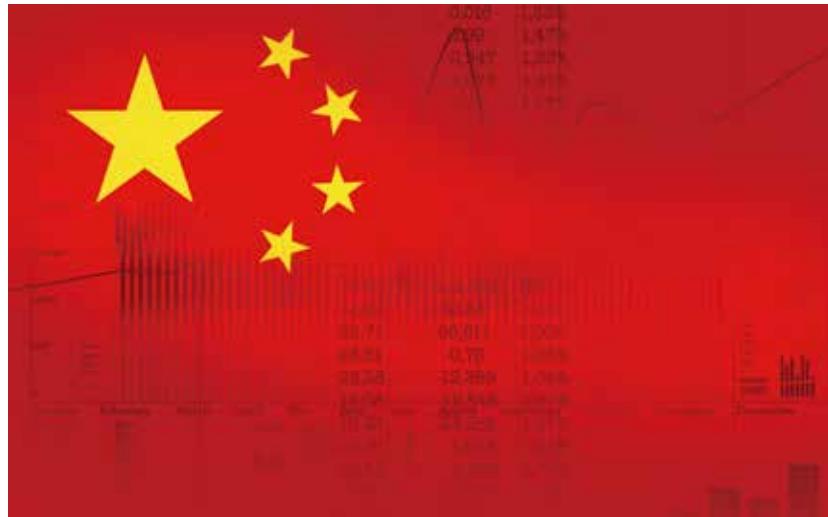
국내·외 지방재정 동향

글로벌 지방재정 이슈



「중국」 리커창 총리, '17년 중국 GDP 성장을 6.9%로 예상

자료 : 21세기경제보도 2018.01.12



지난 2018.01.10(수)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란장(瀾滄)강-메콩강 협력회의(LMC) 2차 정상회담 시 2017년 중국의 GDP 성장을 6.9% 수준으로 예상하고, 지난 한해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예측보다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GDP 성장을) △'10년 10.6% 이후 지속 하락해 △'11년 9.5%, △'12년~'14년 7~8%, △'15년 6.9%, △'16년 6.7%를 기록한바, '17년 6.9%를 달성한다면 GDP 성장률이 8년 만에 처음 증가하는 것.

리커창 총리는 2017년 한해 ① 대도시 실업률이 최근 몇 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② 수출입은 지난 2년간의 하락 국면에서 탈피했으며, ③ 재정 수입, 주민 수입, 기업 효율이 뚜렷이 개선되고 ④ 채권 시장, 증권시장,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⑤ 외환보유고가 지속 증가하고 ⑥ 기업 레버리지 해소 작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2017년 중국 경제의 양호한 실적은 인위적인 경기 진작 정책의 지양, 공급 측 구조개혁에 힘쓴 것, 혁신을 추진하고, 거시조정 정책을 완비하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평쉬밍(馮煦明) 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의 안정적인 증가는 수출 진작 이외에도 첨단 제조업의 성장,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분야의 활력 강화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사회 활력과 혁신력을 육성하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과 기술 진보가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근본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1세기경제보도(1.12)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경제에서 특징적인 점은 M2(광의통화)의 증가율 하락이다.

※M2 발행량은 '07년~'16년 줄곧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특히 '09년 28.5%, '10년 19.7%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17년 11월 말 기준 증가율은 9.1%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

이에 대해 인허증권(銀河證券) 쥐샤오레이(左曉蕾) 자문가는 현재 중국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한 바 통화 발행량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M2 발행량의 급속한 증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부채 리스크 및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일본」 상하수도 등 노후시설에 민간자본 유치 촉진…“요금 인하 기대”

자료 : 연합뉴스 보도 01.04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매각을 촉진하고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자금 활용 사회자본 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PFI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에 민간 자금이나 아이디어를 살려 저비용-고수준 운용을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지난 01월 04일(목)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나 공공시설 운영권을 매각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 없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빌린 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허가한다. 이는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를 고려해 민간자금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통해 공공요금 인하로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시도다. 이 하수도관에서는 2013년 하수에서 열에너지를 얻는 실증실험이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PFI 추진계획을 변경해 사회기반시설의 매각 액수나 투자액 등의 합계를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간 21조 엔(약 198조 원)으로 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사업 사례를 보면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하수도가 2018년도부터 20년간 민간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연 20억 엔 정도로, 운영이 성공하면 주민 이용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내구연한을 맞이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은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하수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도 2%에서 2021년도 7%, 2031년도 23%로 늘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 상하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유지 비용은 2013년도 3조6천억 엔에서 2023년도에는 최대 5조1천억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PFI법에 따라 간사이국제공항이나 센다이공항, 아이치현 유료도로 운영권 매각 등 9조1천억 엔 규모 매각 성과를 보였지만 상하수도는 공항과 비교해 매각 진행이 늦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각 수속이 복잡하거나 해당 시설을 파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상하는 이점이 적기 때문인 것 같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자치단체의 매각 절차나 재정 부담을 가볍게 해 주는 PIF법 개정안을 01월 22일(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지금은 안건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 뒤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면 의결이 불필요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절차 밟기에는 수개월~수년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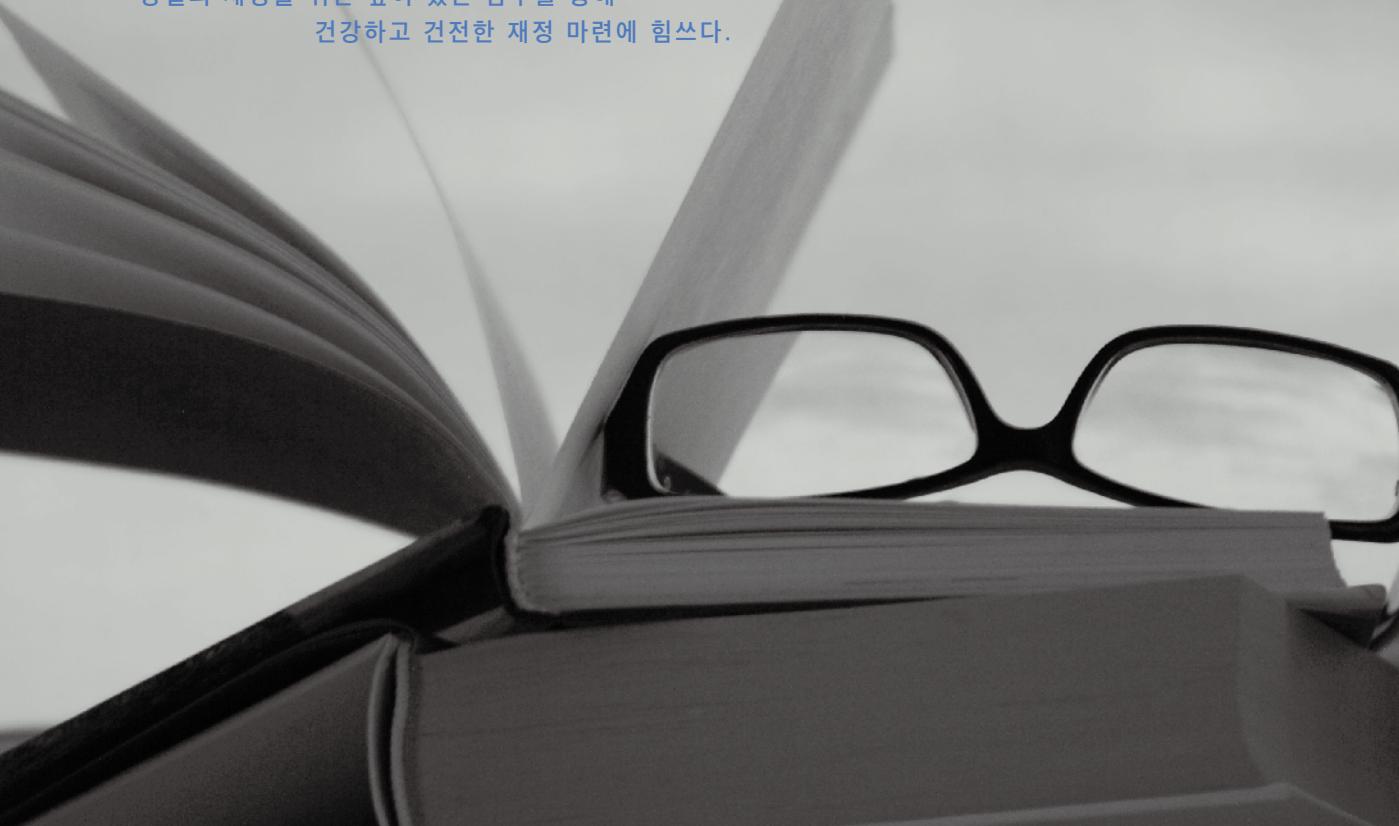
이율러 운영권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시설 이용 요금을 설정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한다. 지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신고하는 것만으로 마치게 한다. 민간의 더욱 자유로운 운영을 촉진해 서비스의 효율화나 질 향상을 기대한다. 기업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리를 장으로 하는 상담창구를 마련, 지원조치나 규제 내용을 조언한다.

중앙정부에서 빌린 운영 자금을 앞당겨 갚아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인정한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 쉽게 해주는 것은 유럽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한 것이다.

才 深 才 木

찾다, 깊이 연구하다 (탐)

양질의 재정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재정 마련에 힘쓰다.



재정[財政]을 위한 탐구[探求]

건강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연구하다。

바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운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공제사업은 물론 재정 전문 정책지로서 지방회계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5대 국정 과제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으로 지방분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과제 등의 통계와 통계 관리에 집중하고, 양질의 재정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재정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



글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미국 지방정부 비만세 동향의 시사점

I. 비만세의 의의와 연혁

식당에 가면 음료수 선택에 소다(soda)라는 유형이 따로 있다. 소프트 드링크(soft drink)로 구분되는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이다. 바로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를 유발하는 음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맛'이 우리로 하여금 곧잘 선택하게 하고, 가끔 소화가 '잘된다'는 이유로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정부가 간섭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비권장재화(demerit goods)에 대한 세금일 수도 있고, 일종의 나쁜 행위에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sin tax) 유형이다. 고기에 대한 과세(Meat tax), 비만세(fat tax), 탄산음료세(soda tax), 담뱃세(Tobacco tax), 주세(Liquid Tax), 사탕세(Candy Tax)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를 주창한 학자의 이름을 따라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각국에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경험하였다. 반면 최근 미국 지방정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시카고 주에 소속한 쿡 시(Cook County)에서 비만세를 잠깐 이용하다가 2017년 12월 주민의 저항으로 인해 폐지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만세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국과 미국 지방 정부의 비만세 동향 분석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II. 이론적 근거

1. 피구의 논점

1920년 영국 경제학자인 피구(Arthur C. Pigou)는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별 경제주체 단위에서 한계비용과 한계 편익을 일치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 편익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즉 개별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만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켜 과대 생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건설 등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알코올을 생산하는 공급자는 경찰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류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 쟁점

탄산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의 논거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에 근거한다. 탄산음료의 소비가 개인에게는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 관련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첫째 실제 탄산음료와 설탕이 건강을 해치는가? 둘째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드는가? 이럴 경우 소비를 줄이게 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세금, 규제, 교육과 홍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을 우려한다면 운동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성이 외에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중되는 형평성 차원의 부작용은 없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1) 설탕 음료와 건강

암 유발 가능성 때문에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는 당뇨와 비만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만세(fat tax)는 패스트푸드(fast food)와 같은 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장 질환은 전 세계 사망의 31%를 차지하며, 한 번의 설탕 음료는 심장에 최소한의 영

향을 미치지만, 매일 섭취하는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설탕으로 청량음료가 제공될 때마다 남성은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많은 선진국 및 중진국의 과체중 및 비만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공중 및 보건 정책에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당류가 함유된 음료에서 첨가된 설탕의 섭취는 과량의 체중과 비만으로 높은 칼로리 섭취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2) 과세와 소비

높은 세금은 먹거나 마시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인한 수입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보조하고 영양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만세는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을 억제하고 비만의 경제적 비용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연구에서 술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음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1988년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1갑당 25센트씩 주세를 인상하고 나서 1988년에서 1993년 사이에 담배 사용량이 미국 평균보다 3배 높은 27% 감소한 것을 보였다.

비만세는 비만과 관련된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탕으로 달게 한 음료에 1온스 당 1센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음료의 소비를 25%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그것을 지지한다. 먹는 행동은 영양에 대한 교육보다 가격 인상에 더 민감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만인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음식값의 변화에 덜 민감하다는 증거도 있다는 것이 논쟁을 유발한다.

3) 형평성

① 교육과 조세 그리고 소비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에 더 많은 수입을 지출하기 때문에 비만세가 소득에 역진적 일 수 있다는 것도 쟁점이다. 식품이나 재료에 대한 제한과 달리 비만세는 소비자의 선

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인 가격만 변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비만세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식품 소비에 대한 지출을 낮추는 정도까지 역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반 인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이 관련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 형평성을 위해 비만세의 수입으로 건강한 식품과 건강 교육 보조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소다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베트남과 인도와 같은 중간 소득 경제국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공급자와 소비자의 부담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 공급자와 소비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미시 경제학에서는 수요탄력성이 크면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탄력성이 크면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설탕 관련 음료수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칠레에서는 -1.37 이고, 멕시코에서는 -1.16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비자에 대한 부담은 칠레보다는 멕시코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4) 소비자의 선택권

유모 국가론(nanny state)의 개념을 사용하는 비평가들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금 제도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정부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지방세위원회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비자, 농부 및 식품 유통 업체의 삶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food czar”라는 별칭을 갖는 이유이다.

그리고 건강의 영향 관계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개인별로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영국 식품 의약청 (Food and Drink Federation) 관계자는 치즈를 예로 들었다. 그것은 지방이 높을 수 있지만 적당량의 치즈는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소다(sodas)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이지만 소량 섭취해도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이러한 음식을 가끔 즐기는 사람들조차 불공정하게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III. 외국의 비만세 경험과 시사점

다양한 국가의 공중 보건 종사자 및 학자들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대한 세금을 요구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위험한 식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현재의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크 푸드 매장은 전통 음식점을 밀어내고 비만, 당뇨병 및 심장 질환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회의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담배에 대한 세금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비만 관련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발생했다.

1. 영국

2011년 10월,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기자 회견에서 영국 정부가 영국의 비만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비만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16년에 소다 과세를 승인하였고, 2018년 4월부터 집행된다.

2. 일본

일본은 증가하는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허리 사이즈 측정을 포함한 ‘metabo’ 법을 시행했다. 남성 허리 사이즈는 33.5인치, 여성 허리 사이즈는 35.4인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체중 인구를 향후 4년 동안 10%, 향후 7년 동안 25% 줄이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과 지방 정부에 대해 재정적인 벌칙을 부과한다.

‘metabo’법은 고용주와 지방 정부가 4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에 대한 허리 측정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 덴마크

덴마크는 1930년대 청량 음료수 세금(리터당 1.64 덴마크 크로네)을 제정했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덴마크는 버터, 우유, 치즈, 피자, 고기, 기름 및 가공식품에 2.3% 이상의 포화 지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지방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비만세 및 설탕세를 피하기 위해 덴마크인들이 단순히 버터, 아이스크림, 소다 등의 구매 가격이 낮은 이유로 스웨덴과 독일에 간다고 불평했다. 특히 지역 소매상인들의 불만이 매우 컸다. 덴마크 국민의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국경 간 거래를 장려했으며 덴마크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생산자의 소득에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덴마크는 2013년 1월 비만세를 폐지하고 2014년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을 폐지했다.

4. 핀란드

핀란드는 2011년에 청량 음료수 세금을 도입했다.

5. 헝가리

헝가리는 2011년 9월에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공중 보건 제품 세금의 일부로 설탕세를 부과한다.

6. 프랑스

프랑스는 2012년 국가 차원에서 설탕 관련 과세를 도입하였다. 이에 탄산음료 가격은 3.5% 인상되었다. 2016년 연구에 의하면 1주일 기준으로 과세된 탄산음료 소비가 9%가량 감소되었다고 한다.

7. 멕시코

멕시코는 2013년 9월 탄산음료에 대해 10% 세율을 과세하기로 했다. 멕시코에서는 탄산음료가 비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탄산음료 과세가 비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크지 않고 특히 이와 관련한 산업을 위축하여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 인도

2016년 6월 예산의 일환으로 인도 케랄라 (Kerala) 주 정부는 브랜드 식당에서 제공되는 버거, 피자 및 기타 정크 푸드에 대해 14.5% ‘비만세’를 제안했다. 이들은 소비에 ‘해로운’ 것으로 불리는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업계의 추측에

따르면 캐릴라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하는 McDonald, Chicking, Burger King, Pizza Hut, Domino's Pizza, Subway 등 패스트푸드 점포가 50~75개가 있다. 캐릴라는 브랜드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햄버거, 피자, 도넛 및 타코에 '비만세'를 도입한 최초의 인도 지방정부이다.

9. 미국

미국에서 여러 차례 비만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914년 우드로 월슨 (Woodrow Wilson)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 보험 개혁의 연장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식품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실패했다. 리처먼드 시 정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 등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러한 비만세에 대항하기 위해 전미음료협회(the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는 의회에 로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2003년의 \$391,000에서 2008년에는 \$690,000으로 로비 자금이 상승했다고 한다. 이들의 주된 초점은 소다세(soda tax)가 역진적인 조세(a regressive tax)이며 빈곤 계층에 불공평하게 부담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콜롬비아

2016년에 시민 운동가인 Educar Consumidores에 의해 설탕 음료에 대한 20% 세금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입법부에 의해 거절당했다. 콜롬비아에서 소다는 생수보다 저렴하다.

11.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22년 설탕세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설탕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정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무알코올 음료는 일반 세금에서 분리되었으며, 2017년에는 설탕 음료에 대한 세금이 3.34 크로나/리터로 설정되었다.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2016년에 제안되어 2017년부터 설탕이 가미된 음료수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IV. 미국 지방정부의 비만세 동향

미국은 전 국가적인 범위에서 소다세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몇몇 시 지역에서 병으로 된 탄산음료(soft drinks) 또는 도매 거래상, 제조자 또는 판매상에게 물품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2014년 11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는 미국에서 최초의 진료 음료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이다. 이후 2016년 들어 미국 시 정부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이 발생했다.

1. 버클리 시

버클리에서는 2014년 11월에 시민 76%의 찬성으로 탄산음료세가 도입되었고, 201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1온스당 1센트의 탄산음료세 도입 이후에 20% 이상으로 소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 탄산음료세가 도입되지 않은 인근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가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2. 포틀랜드 시

오리건 주에 있는 포틀랜드 시에서는 아동 건강과 교육을 위한 연대(The Coalition for Healthy Kids and Education)라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18년 5월에 투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탄산음료 1온스에 대해 1.15센트의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시애틀 시

2017년 6월에 시애틀시 의회는 탄산음료 1온스에 대해 1.75센트의 과세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4. 필라델피아 시

민주당 출신의 Jim Kenney 시장이 온스당 3센트인 미국 사례 중 가장 높은 세율의 소다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Bernie Sanders는 가난한 계층만 피해를 주는 세금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방했다. 반면 Hillary Clinton은 찬성하는 입장을 표방하여 전국적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필라델피아 시 의회는 온스당 1.5센트의 탄산음료세를 2016년 6월 통과하였고, 2017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슈퍼마켓과 음료수 배분 업체는 매출액이 30% 내지 50% 감소함에 따라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Kenney 시장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이러한 업계의 대응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첫 일사분기의 탄산음료세는 2,560만 달러가 징수되었다. 이러한 세입으로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을 위한 자금, 공무원 후생 증진, 공원과 휴식처 개선 등에 지출함으로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탄산음료 소비는 1주일에 1.3회의 드링크로 감소되는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금과 더불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는 경우에 효과는 증폭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는 빈곤층에 부담이 귀착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반대 로비를 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음료협회, 필라델피아의 기업 소유주 및 기타 원고는 세금이 주 헌법의 '조세 통일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다 세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의료 관련 모임인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Heart Association 등은 찬성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5. 샌프란시스코

2014년 소다 세금에 대한 최초의 국민 투표 법안 E가 샌프란시스코에 의해 투표되었다. 2014년 국민 투표는 55%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 투표가 특정 항목에 대한 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3분의 2에 못 미쳐서 폐기되었다.

한편 1온스당 소다 세금 (발의안 V)은 2016년 11월 8일에 투표의 61% 이상을 통과했으며 2018년 1월 1일에 설탕 음료 판매에 적용된다. 세금 면제에는 유아용 조제유, 우유 제품, 보충제, 의학적 이유로 사용되는 음료 및 10% 과일 및 채소 주스가 포함된다.

6. 오클랜드 시

오클랜드 시에서는 2016년 11월 8일에 1온스당 1센트의 소다 세금이 투표의 60% 이상을 통과했다. 세금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7. 캘리포니아 알바니(albany) 시

1온스당 1센트의 소다세가 2016년 11월에 70%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8. 콜로라도 볼더(Boulder) 시

1온스당 2센트의 소다세가 2016년 11월에 54%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조성된 재원은 일반 건강 증진 사업, 만성질병 예방, 저소득층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9. 쿡 카운티(Cook County)

일리노이주에 있는 쿡 시(Cook County)에서는 매우 드라마틱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1온스당 2센트의 소다세가 2016년 11월에 찬성 9 반대 8의 극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30일 쿡 카운티 판사는 일리노이 소매상인 협회와 쿡 카운티에 소재한 식료품 업체가 최소한 7월 12일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그리고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의 충돌로 인해, 소다세는 87만 명이 사용하는 푸드 스탬프로 만든 소다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은 소다에 더 노출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가 희석되었다. 특히 CAN the tax coalition 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대대적인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2017년 10월 10일, 시 의회(the Board of Commissioners)는 15-2표로 세금을 폐지하도록 투표했다. 이제 소다세는 12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 세금은 매우 인기가 없었으며 주로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 보다는 카운티의 18억 달러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인근 지역으로 구입을 하려 이동하기 때문에 소비 그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쿡 카운티 내에서의 경기만 위축시킨다는 것도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V.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세금은 없다. 나의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금이 내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한다면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세금이 공유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그러하다. 그러한 연장에서 비권장재화(demerit goods)에 대한 과세가 도입된다. 담뱃세, 주세가 그러하다. 이에 비만세 또는 설탕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각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로서 도입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만 도입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가서 소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전국이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사업이나 유통업체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를 즐기는 애호가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시기에 적극적인 검토의 의미가 있는 재원이다.

글 황진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 해외정책조사원¹⁾

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1. 도입: 미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종래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주민의 행정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이루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

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도 같은 맥락에서 고안 및 운영되고 있는데, 그 발단은 1980년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세저항 운동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²⁾ 그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의 과도한 재산세 부과에 반발하여 시민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세저항 운동을 목격한 많은 주 정부들은 이러한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 관련 정책 결정에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그 의미와 효율성 등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비전문가인 일반 주민을 참여시키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의 낭비나, 추가적인 비용부담의 문제, 의사결정의 지연, 결정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무엇보다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단순한 감정적 요인이

1) 미국 세무사, 법학 박사, 미국 YnC 세무법인 대표, 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2) 미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은 송용찬, 미국 사례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http://cl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PID=data&seq=5214&goto_page=2>, [cited on 11-30-2017].

나 일시적인 주민들의 선호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장기화 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의 효용성이 재평가되는 국면도 있다. 즉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지방정부의 재산세(property tax) 수입의 감소로 나타났고,³⁾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⁴⁾ 예컨대, 미국 네브래스카(Nebraska) 주 링컨(Lincoln) 시는 정부 사업이 축소되었음에도 재산세율을 높여 재정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성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회의와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결정단계에서는 공청회(public hearing)와 온라인 의견청취를 통해 주민들의 최종 승인을 얻어 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링컨 시는 정부 제공 서비스를 축소하면서도 재산세율을 인상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성공사례는 미국의 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체로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 제도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실질적인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의 대표성을 높이고, 고학력 인구의 증가는 보다 전문적인 의견 개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링컨 시의 경우가 미국 내의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며, 이처럼 다양한 주민참여의 기회가 아직 미국 전역에 보편화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⁵⁾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주목받고 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 글에

3)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크게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정부(State government)로 나누어 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에는 '카운티(county)'라 하여 미국 전역에 약 500여 개의 지방자치 단위가 함께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 직접 생활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미국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정부가 존재하는 국가로 보일 만큼 카운티의 영향력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산세(Property tax or Real property tax)의 경우 이를 주로 카운티에서 관掌하고 있고, 카운티가 별도의 소득세(income tax)를 걷는다거나, 사업면허·허가(Business license or permit)나 판매세(Sales tax)를 관掌하는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4) 송용찬, 앞의 자료. 5) Ibid.

서는 특히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버지니아(Virginia)주의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헌터 밀 지구(Hunter Mill District)에서 실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Budget Advisory Committee)와 라우든 카운티(Loudoun County)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위원회(Advisory Boards, Commissions & Committees)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제를 엿보기로 한다.⁶⁾

특히 이 두 지역은 미국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다. 주거, 교육 및 각종 생활 정보를 다루는 미국 유명 사이트인 니치닷컴(Niche.com)이 선정한 2017년도 미국 내 살기 좋은 카운티 순위에서도 라우든 카운티는 9위, 페어팩스 카운티는 13위에 올라 있으며,⁷⁾ 미국 내에 500여 개의 카운티 중에서 언제나 살기 좋은 카운티 평가 상위권에 올라 있는 지역이다. 특히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지역이어서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치안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이 우수하고 근래에도 지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어서, 이 두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 내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민참여제도(Budget Advisory Committee)

우선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회계연도가 매 7월 1일에 시작된다. 즉 새로운 예산의 집행이 이때 시작된다는 것이다.⁸⁾ 해당 연도에 제안된 예산에 대한 카운티 집행부(County Executive)의 공표는 통상 2월 중에 실시되며, 공청회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3일 동안 실시되며, 해당 예산안은 보통 4월 말까지 승인이 된다. 이러한 통상적인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헌터 밀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Budget Advisory Committee)를 두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 위원회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카운티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지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안을 작성하기도 한다.⁹⁾

이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헌터 밀 지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위원회는 2017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1년간 총 11차례의 회의(meeting)를 가졌다.¹⁰⁾ 이러한 회의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

6) Board Budget Committee Meetings, <<https://www.fairfaxcounty.gov/dmb/>>, [cited on 11-28-2017].

7) 2017 Best Counties to Live in America, NICHE, <<https://www.niche.com/places-to-live/search/best-counties/>>, [cited on 11-28-2017].

8) 학교위원회(School Board)의 예산은 다른 일정에 따르는데, 매년 1월 말에 예산안이 제출된다.

9)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면 2018 회계연도에 대한 등 위원회의 권고안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fairfaxcounty.gov/huntermill/budgetcommittee.htm>>, [cited on 11-28-2017].

난 2017년 11월 28일과 10월 31일에 개최된 회의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1월의 회의에서는 약 두 시간 동안 페어팩스 카운티와 교육청의 2019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전망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 2월 말에 이날 논의된 주제에 대해 다시 토론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10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더욱 많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우선 유소년층 자살을 검토하는 부서(Youth Suicide Review Team)의 연간 활동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한 해 동안 해당 부서의 활동을 설명하고 그 실적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 자산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Capital Improvement Program, CIP)¹¹⁾에 대한 프로젝트의 논의 등이 있었다. 특히 이 CIP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특별히 우선적(Specific priorities)으로 다루어야 할 예산 항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끝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의 편성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하였다.¹²⁾

3. 라우든 카운티의 주민참여위원회 (Advisory Boards, Commissions & Committees)

다음으로는 라우든 카운티(Loudoun County)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위원회(Advisory Boards, Commissions & Committees)를 살펴보기로 한다.¹³⁾ 이 지역도 페어팩스 카운티 못지않게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시스템 또한 매우 잘 발달 되어 있기로 유명한 카운티인 만큼 그 제도의 완성도 또한 높아 보인다. 다만 페어팩스 카운티와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지역은 단지 예산에 국한된 위원회가 아니라 통상적인 자치단체 운영 전반에 관해 여러 종류의 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 위원회가 때에 따라서는 예산 문제도 다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 누구나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문호를 넓게 개방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카운티의 주민참여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참

10) Board Budget Committee Meetings, <<https://www.fairfaxcounty.gov/dmb/>>, [cited on 11-28-2017].

11) 잠재적 소요 유형에 따른 지역별 5-10개년 자산 증진 프로그램(5-10 Year CIP Potential Shared Use Opportunities (By District) 예제는 별첨 1, 잠재적 소요 유형에 따른 연도별 5-10개년 자산 증진 프로그램(5-10 Year CIP Potential Shared Use Opportunities (By Year) 예제는 별첨 2 참조.

12) 이 카운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작성되었음.

13)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dvisory Boards, Commissions & Committees, Loudoun County, <<https://www.loudoun.gov/index.aspx?NID=87>>, [cited on 12-05-2017].



미국 라우든 카운티 예산 관련
공청회 장면 웹캐스트(webcast) 화면

가를 신청할 수 있다(online application).¹⁴⁾ 라우든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resident)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양식은, 제출 뒤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자기소개의 기회를 가진 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일원으로 선발되게 된다. 주로 자신의 관심 분야, 경력, 자원봉사 경험, 학력 및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선발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라우든 카운티가 그 기록을 보관하는데, 공공의 필요에 따라 공개도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위원회와 특별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서(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를 작성토록 하여 사전에 분쟁의 요소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참여에 일정한 자격증(certification)을 요구하기도 한다.

라우든 카운티의 또 다른 특징은 9인의 멤버로 구성된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은 주민이 아닌 4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위원회이지만, 그들의 활동을 웹 캐스트(webcast)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위원회는 자신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공청회(public hearing)를 웹 캐스트를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왼쪽 상단 사진 참조).¹⁵⁾ 이렇게 투명하게 예산 편성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일 것이다. 즉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일부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도 자신들이 사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미국 워싱턴 D.C. 인근 주요 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와 라우든 카운티(Loudoun County)의 주민참여예산제도(Budget Advisory Committee)와 주민참여위원회제도(Advisory Boards, Commissions & Committees)를 살펴보았다. 전자와 같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기 위한 위원회이든, 후자와 같이 자치 단체 운영 전반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이든 주민(residents)에게 자치단체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폭넓게 주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라우든 카운티와 같이 공청회(Public Hearing) 과정을 온라인

14) 참가 신청서 양식은 별첨 3, 라우든 카운티 주민참여위원회 온라인 참가 신청서(Online Application Form) 또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면 그 상세를 확인할 수 있다. Online Application Form, Loudoun County, <<https://lfportal.loudoun.gov/Forms/Advisory-App>>, [cited on 11-29-2017].

15) February 28 Webcast, Board of Supervisors Public Hearings, <http://loudoun.granicus.com/MediaPlayer.php?view_id=69&clip_id=4785>, [cited on 12-03-2017].

을 통해 공개하거나, 위원회 참여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기회를 열어 놓은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종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각종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기회를 가능한 많이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일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에 비해 전산화나 자동화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연방이나 주 정부 등 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좀 더 용이한 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이와 같은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보다 열린 자세로 구성원에게 다가가려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에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송용찬, 미국 사례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http://cl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PID=data&seq=5214&goto_page=2,
[cited on 11-30-2017]

2017 Best Counties to Live in America, NICHE,
<https://www.niche.com/places-to-live/search/best-counties/>, [cited on 11-28-2017]

Advisory Boards, Commissions & Committees, Loudoun County,
<https://www.loudoun.gov/index.aspx?NID=87>, [cited on 12-05-2017]

Board Budget Committee Meetings,
<https://www.fairfaxcounty.gov/dmb/>, [cited on 11-28-2017].

Budget Committee, Fairfax County,
https://www.fairfaxcounty.gov/huntermill/_budgetcommittee.htm,
[cited on 11-29-2017]

February 28 Webcast, Board of Supervisors Public Hearings,
http://loudoun.granicus.com/MediaPlayer.php?view_id=69&clip_id=4785,
[cited on 12-03-2017]

<별첨 목록>

별첨1 : 잠재적 소요 유형에 따른 지역별 5-10개년 자산 증진 프로그램
(5-10 Year CIP Potential Shared Use Opportunities (By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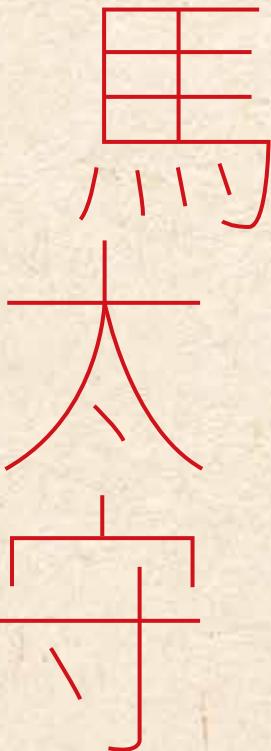
별첨2 : 잠재적 소요 유형에 따른 연도별 5-10개년 자산 증진 프로그램
(5-10 Year CIP Potential Shared Use Opportunities (By Year))

별첨3 : 라우든 카운티 주민참여위원회 온라인 참가 신청서(Online Application Form)

조선 전기의 문신 송晦은 50여 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다섯 번에 걸쳐 청백리로 포상받은 청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호 ‘지지당(知止堂)’은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다. 송晦은 오랜 관직 생활 동안 그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처신을 삼가며 스스로 경계하는 삶을 살았다.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일평생 청렴결백하게 지내 온 그의 행적은 오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세 마리 말과 함께 부임한 원님

지지당 송晦【宋欽】 선생



송晦은 조선 전기에 태어나 성종 때부터 명종 때까지 활동했다. 성종 1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2년 후 문과에 병과로 급제,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에서 나랏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산군의 폭정을 겪은 그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서 후학 양성에 힘 쓰기도 했다. 이후,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의 시대가 오자 다시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홍문관 관리로 역임하는 등 일평생 동안 51년이라는 긴 시간을 관직에 머물렀다. 그는 101세로 장수한 어머니를 자극하게 모신 것으로 유명했으며, 뛰어난 효심으로 왕으로부터 수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송晦은 얹힌 일화로 ‘삼마태수’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젊은 시절 송晦은 같은 홍문관 관리 최부와 절친하게 지냈다. 송晦이 최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공적으로 사용하는 역마를 몰고 온 송晦을 본 최부가 역정을 내며 꾸짖었다. 최부의 꾸짖음에 극도로 부끄러움을 느낀 송晦은 이날 집으로 되돌아갈 때 말을 타지 않고 손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나라의 재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를 평생 실천에 옮겼다. 송晦이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당시 관례에 따라 말을 일곱 마리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작 말 세 마리에 어머니, 아내 그리고 단출한 짐을 싣고 검소하게 행차했다. 말 세 마리만을 거닐고 조촐하게 부임하던 송晦을 주인공으로 한 ‘삼마태수’라는 사자성어는 어느새 청백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송晦은 “근면 절약하며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백성을 통치한다면 백성이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말을 즐겨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송晦은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고심한 관리로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전라도 관찰사 이사관에 따르



면 송흠이 광주목사로 있을 때 세금을 줄이고 형벌을 삼가는 등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갖고 고을을 잘 다스렸기에 광주 백성들은 송흠이 떠난 뒤에도 그를 사모하면서 잊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백성들의 생계를 걱정한 나머지 집안 사정에는 밝지 못했다. 식솔들은 겨우 끼니만 때울 정도로 곤궁했다고 전해진다. 오랜 관직 생활에도 축재하지 않은 그의 곳간에는 녹봉으로 지급받은 한 두 섬의 곡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청렴한 탓에 벼슬을 그만둔 후에는 곡식이 단 한 틀도 없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중종이 고향에 있는 그에게 벼슬을 내려 녹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송흠은 자제의 짹을 찾으면서도 청빈함을 잊지 않았다. 그는 “혼인을 함에 있어서 재물과 벼슬을 고르는 일은 오랑캐가 할 짓이며, 사대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송흠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 하에 그의 자녀들은 모두 가난하지만, 사대부의 기품과 행실을 갖춘 집안의 자제와 혼인했다. 그의 물욕 없는 성품이 잘 나타난다. 그의 성품을 물려받은 차남 송의경도 명종 시절 청백리로 뽑혀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갔다.

송흠은 그의 저서 ‘지지당집’에 관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두 문장으로 표현했다.

“물의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물도 맑게 흐르며 표적이 바르고 정직하면 그림자 또한 반듯하다.”
“윗사람이 좋으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더 좋을 것이다.”

이는 50여 년에 걸친 송흠의 관직 생활을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다, 입 밖에 내다 (구)

일상 곳곳에
자리한
지방재정의
모습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미래를 말하다.



우리
곁
일상
속에
숨은
재정이야기
신기하고
놀라운 재정을 살펴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국민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부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국민의 삶을 들보는 행정의 범위는 매우 넓고 또 다양하다. 이러한 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주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돌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돋는 것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종 재정정보와 관리방안에 대한 노하우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지방재정의 전문가로서 늘 가까운 곳에 자리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또는 자치단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및 실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이 빛을 발할수록 국민과 자치 주민의 일상은 지금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다. 일상 곳곳에 자리한 지방재정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미래를 비춰주는 일상 속 지방재정의 모습을 살펴보자.

口

광고로 보는 세상

글 송대길
소비라이프 편집인

“치킨이 반찬?”
굽네치킨 ‘갈비천왕’,
치킨이
‘반찬이 될 수 있다’
입증하나





Goobne
No.1 Oven Roasted Chicken

치킨을 밥과 함께 먹는 인식을 심어주는 굽네치킨 '갈비천왕' TV 캠페인.

굽네치킨, 야식 중심의 국내 치킨 시장 구도를 뒤집다

소주 하면 삼겹살이나 김치찌개가, 와인 하면 치즈나 크래커가 연상된다. 맥주 하면 '치맥', 단연 치킨이 연상된다. 그런데, 치킨을 밥반찬으로 먹으라고 한다. '오늘 저녁 반찬은 치킨입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한 여성의 아이에게 애걸하듯 말한다. "치킨에 밥 먹자~" 아이는 말이 안 된다는 듯이 숟가락을 흔들며 되묻는다. "치킨이 반찬?". 아이의 투정은 당연하다. 아이에겐 치킨은 밥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간식일 뿐이다. "쭉~ 찢어, 쭉! 찢어서 쳅!"이라며 여성은 치킨을 부드럽게 찢어서 양념장에 찍어 하얀 쌀밥 위에 얹어 아이에게 먹인다. "맛있어?". 아이 눈이 갑자기 왕방울만하게 커진다. 아이는 양손을 흔들면서 엄지 칙한다. "짱 맛있어!".

이어 밥을 안 먹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아이에게 아빠가 애걸한다. "밥 먹자~ 한 번만~".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싫어"라며 도망 다닌다. 이때 "밥과의 전쟁은 끝났다"라는 엄마의 자신만만한 나래이션이 이어진다. 역시 치킨을 부드럽게 찢어서 양념에 쭉 찢어 흰밥에 얹어 아이에게 먹인다. 아이 눈이 왕방울만큼 커진다. "왕 맛있어!".

굽네치킨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야식인 치킨을 왜 밥반찬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치킨은 치느님(치킨과 하느님의 합성어)로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 대중 친화적인 음식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1주일에 1회 이상 야식을 먹고, 78%가 가장 즐겨 먹는 메뉴로 치킨을 꼽았다. KB금융지주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킨집은 전국에 3만 6,000곳이나 된다. 이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 보다도 많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만큼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밥 안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고민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굽네치킨
'갈비천왕' TV 마케팅 인사이트

국내 치킨 시장은 크게 비비큐와 교촌치킨의 양강체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가맹점 수는 비비큐가 우위에 있고, 연평균 매출액은 비비큐와 교촌치킨이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치킨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편의점, 피자나 햄버거 가맹점은 물론 커피 전문점보다도 낮았다. 굽네치킨은 경쟁이 심하고 돈은 안 되는 시장에서도 1, 2위를 못 하고 있다. 굽네치킨은 야식으로 대표되는 국내 치킨 시장의 기준 구도를 뒤집지 않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굽네치킨은 야식 시장으로 대변되는 국내 치킨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결단을 내린다. 치킨 시장의 빈 공간에 '반찬' 시장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다. 치킨 반찬 시장이 새로운 치킨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밥과 먹고
싶게 만드는
시즐(Sizzle)과
아이의 먹고
난 후 반응이
마케팅
인사이트를
빛나게 해

굽네치킨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까? 실제로 한국에는 치킨집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닭고기 소비량은 경제 수준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년에 15.4kg으로 OECD 회원국 평균 27.5k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야식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상태일 수 있지만 전체 치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뜻이다.

굽네치킨의 또 다른 인사이트는 표적 집단 선정이라 할 수 있다. 굽네치킨은 사용자를 성인이 아닌 아이로 봤다. 성인은 치킨이 맥주와 함께 먹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어렵지만 아이는 성인보다 수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또한, 구매자로 밥 안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매일 매일 고민하는 엄마들을 선정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었다는 것 역시 탁월한 인사이트이라 할 수 있겠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을 표적 집단으로 선정한
굽네치킨 '갈비천왕' TV 캠페인



성장 가능성 있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가능성 높은 집단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굽네치킨의 마케팅 인사이트였다면, 치킨의 시즐(Sizzle)과 모델선정은 굽네치킨의 마케팅 인사이트를 더욱 돋보이게 한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라 할 수 있다.

식품광고의 핵심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굽네치킨 '갈비천왕' TV 캠페인 핵심은 일단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맛깔스러운 치킨 비주얼이다. 또한, 아이가 먹고 난 후 '믿을 수 없는 맛'이라고 보인 반응은 엄마들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게 하는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이다.

일단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맛깔스러운 치킨 비주얼을 보여주는
굽네치킨 '갈비천왕' TV 캠페인



여의도 봄꽃축제 vs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의 계절이 찾아왔다. 매년 4월이면 거리마다 벚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에는 떨어지는 꽃비가 우리의 마음을 한껏 어지럽힌다. 봄바람에 묻어나는 꽃 내음에 마음이 달뜨는 4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인 여의도와 벚꽃에 관한 아름다운 전설을 지닌 하동의 벚꽃축제를 살펴봤다.

돌아온 벚꽃엔딩,
전국 최고의 벚꽃축제를 찾아라

여의도 봄꽃축제를 찾아온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벚꽃 구경에 여념이 없다. 사진제공 이범수(한국관광공사)



서울 벚꽃축제의 대표 주자, 여의도 봄꽃축제

2005년부터 시작한 여의도 봄꽃축제는 올해로 14회를 맞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4월이면 약 1.7km에 이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뒷길인 윤중로 양편에 벚나무가 화사하게 꽃 피운다. 거리를 분홍빛으로 수놓은 벚꽃은 상춘객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지난 1968년, 여의도 신시가지를 개발할 당시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 1,400여 그루를 윤중로에 심었다. 지금은 식구가 불어나 왕벚나무 약 1,800여 그루가 우리를 반긴다.

'봄꽃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벚꽃 외에도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13종의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탁 트인 푸른 한강과 울긋불긋한 봄꽃의 조합을 바라보고 있자면 도심 속 빼곡한 빌딩 숲에 갇혀 답답했던 기슴 한구석이 뻥 뚫린다. 봄기운을 잔뜩 담은 강바람에 훌날리는 벚꽃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는 윤중로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봄꽃축제가 열리는 주말이면 꽃놀이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여의도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룬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이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 곳곳에 설치된 부스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참가해 기념품을 얻기도 한다.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지각색의 주전부리는 봄꽃축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는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거리 예술공연, 캐릭터 퍼레이드, 백일장, 꽃마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사랑하는 이와 손을 맞잡고 걸으면 사랑을 이뤄준다는 하동의 '흔례길'. 사진제공 김지호(한국관광공사)





봄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윤중로에 들러 벚꽃을 만끽하는 상춘객들.

사진제공 이범수(한국관광공사)

짧은 꽃놀이에 아쉬움을 느낀다면 인근의 여의도 공원으로 펴크닉을 떠나자. 곳곳에 심어진 벚나무와 공원 한 쪐에 마련된 연못과 정자가 봄의 운치를 더한다. 공원 가장 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폭신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특히, 공원 중심에 위치한 광장에서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대여할 수 있어 활동량이 많은 아이에게 인기 만점이다.

저녁에는 요즘 뜨고 있는 밤도깨비야시장에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매주 주말 저녁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열리는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 어 선 푸드트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각종 푸드트럭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전 세계 식도락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액세서리, 방향제, 패션 잡화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마련돼 있으며, 야시장 곳곳에서 거리공연, 게릴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돼 눈과 입, 그리고 귀까지 사로잡는다.

사랑을 이뤄주는 낭만의 길,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남해고속도로에서 하동 IC로 나와 19번 국도를 따라 달리다 보면 도착하는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무미건조한 고속도로가 끝나고 펼쳐진 새하얀 별천지는 보는 이에게 탄성을 자아낸다. 꽃이 열리는 곳이라고 하여 화개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그 이름답게 섬진강 변을 따라 활짝 핀 왕벚나무 1,200여 그루가 가지를 엮어 만든 벚꽃 터널이 인상 깊다.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화개천에서 쌍계사 초입까지 이어지는 5km 남짓의 ‘십리 벚꽃길’로 유명하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오른 이곳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손을 맞잡고 꽃비를 맞으며 거닐면 사랑이 맺어져 백년해로한다는 전설이 있다. 사람들은 이 로맨틱한 전설을 토대로 ‘혼례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붉은빛이 도는 하동 벚꽃은 사랑하는 이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십리 벚꽃길은 녹차밭과 벚꽃이 어우러져 이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김지호(한국관광공사)



화개장터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물품. 전통시장 특유의 정겨움이 느껴진다.
사진제공 김지호(한국관광공사)

수줍은 뺨을 연상시킨다.

이곳은 밤에도 벚꽃을 즐길 수 있다. 면 길을 찾아온 상춘객이 어두운 밤에 밭을 돌리지 않도록 벚꽃 개화기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을 사용, 밤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쏟아지는 달빛과 조명이 만나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하동의 밤 벚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에 더욱 특별하다고.

또한, 벚꽃을 보러 온 상춘객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물가에 나무 데크길도 설치돼 있다. 십리 벚꽃길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화개천과 벚꽃이 자아내는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장소다.

화개장터 둔치에서 진행되는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일에 걸쳐 열린다. 짧은 축제일정으로 많은 인파가 예상되니 아침 일찍 출발해 빨리 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벚꽃축제를 둘러본 후에는 하동의 랜드마크인 화개장터도 함께 가보자. 섬진강 가에 자리 잡은 화개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 두 지역 주민이 정겨운 사투리를 주거나 받거나하면서 정을 짹 티우는 곳이다. 광복 이전까지 전국 5대 장터 중 하나였던 화개장터는 지난 2014년 화재 이후 재건해 오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털바꿈했다. 연간 150 여만 명이 찾는다는 장터에는 녹차, 매실, 섬진강 재첩 등 다양한 물품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여전히 붐빈다. 특히, 신명 난 가위질로 홍을 돋우는 화개장터 엿장수는 전통시장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십리 벚꽃길 끝자락에 위치한 쌍계사에는 최초로 차를 심어 재배한 차 시배지가 있다. 신라 흥덕왕 시절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 종자를 이곳에 처음 심었다. 쌍계사 차 시배지에서 딴 차는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랐다'는 뜻의 작설차라고 한다. 이곳에 있는 천 년이 넘은 차 나무와 야생 차밭은 유서 깊은 대한민국 차 문화를 상징한다. 다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

Q1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 자부담 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대행 여부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중 민간 자부담분(전체사업비의 10%)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1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안 될 것임. 다만, 사업의 성격,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Q2

간주처리의 법령위반 사항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A2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됨으로 간주예산 처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Q3

지방의회 국외 연수 경비 산출 관련

지방의회 국외 연수 경비는 조례에 개인당 연간 2회 5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의원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다른 의원이 사용할 경우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보다 초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에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

회여비 3개 통계목)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 연수를 위한 여비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시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4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관련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이 5%이고, 전체예산의 증가율은 -2%일 때 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방법은?

A4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3 지방보조금)」에서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전체예산의 증가율이 -2%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5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상 해석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지방보조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 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제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A5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연도 중에 사업비 내시변경, 수정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 시 변경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

Q6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급에 관한 해석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고,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Q&A를 참고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경우, 202 국내여비, 국외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A6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여비와 관련하여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여비(202-01), 국외업무여비(202-03)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Q7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관련 해석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 분야 지방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 농림축산분야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제1호(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의해 심의 제외대상이 되는지?

A7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제1호의 의미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 농림축산분야위원회에서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임.

Q8

예산 변경 후 명시이월 예산의 변경이 재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 중 명시이월 전 예산 변경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A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3 사업예산 운영기준)」에서 예산의 변경사용에 있어 재변경사용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 추진에 있어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Q9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절차 관련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시 필요한 절차가 나와 있는데, 기금도 이 법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9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Q10

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을 개정하면서 지원제외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었는데, 보조사업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면 무조건 배제 대상이 되는지?

A10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만,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는 의미임.

Q11

기금결산 및 계획의 변경 관련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결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재무활동 20% 초과 변경과 상관없이 전과 동일하게 의회의결 및 기금 운용심의 생략이 가능한지?

A11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의미하는 정책사업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 즉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활동 총액의 20% 이내의 변경에 한하여 의회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LOFA News Letter

LOFA Newsletter 2018 vol.37

2017.01~03



①

2018 주요사업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02월 12일(월) 지방재정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주요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임원 및 팀장, 각 팀 실행지표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표창자 수여식과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2018년을 맞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둘러싼 경영환경과 비전 전략체계를 설명하고, 팀별 실행과제를 보고했으며, 2018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2018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가 03월 16일(금) 충남 천안시청에서 개최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가 모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기관들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3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제3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해 상반기 지방재정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03월 20일(화) 지방재정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직원 및 담당자 등이 약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2차 운영위원회 개최 시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4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주최한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됐다. 단원 140여 명과 행안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난 0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에 걸쳐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됐다. 국민감시단,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예산낭비신고 우수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례특강과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ader's Quiz

독자퀴즈

격월간 <지방재정>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지로써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무개선 의견, 자치단체 우수사례, 에세이 등 지방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는 <지방재정>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더 나은 <지방재정>을 만드는 밀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우)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7층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Tel. 02-3274-2054 **Fax.** 02-3274-2009
E-mail. shchi@lofa.or.kr

위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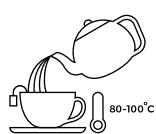
함께 해봐요

따스한 봄소식도 잠시, 뿌옇게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마음마저 답답해지는 요즘입니다.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❶ 세안과 냉찜질



❷ 따뜻한 차 한잔



Quiz. 숨은 단어 찾기

힌트를 참고해 **5개의 숨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찾은 단어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통	제	새	관	입	기	셈
가	울	례	도	서	덕	원
한	력	합	방	사	비	주
재	예	여	우	민	온	고
독	산	자	형	참	은	정
견	국	전	지	수	의	료
세	품	미	공	회	만	로

Quiz hint★

힌트❶ 일반회계 수입+특별회계 수입+기금 수입-내부거래-보전수입
(차입금, 지난 연도 이월금 등) (6글자)

힌트❷ 서울시에서 개발한 계약심사모델 (5글자)

힌트❸ 남원시 예산동아리 (4글자)

힌트❹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활동에 참여하는 제도 (8글자)

힌트❺ 비권장재화에 대한 세금의 일종, 비만 관련 세금(3글자)

저렴한
공제회비!

예산

절감

고객맞춤형
서비스!



건물 및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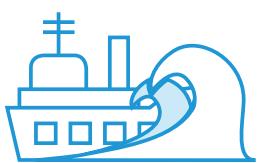
일반보험보다 유리한 운영조건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



건물·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사업을
지원합니다

지방관공선

지방관공선의 재해복구 및 관리·
유지의 저비용·고효율화 지원



영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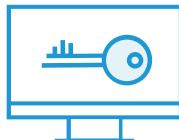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 발생 시
손해보험사 전담으로 신속 처리



영조물 및 행정종합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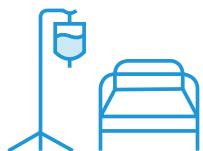
행정종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사망 및 질병

자치단체 이·통장이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시 피해보상금 지급



단체상해 공제사업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서울 행정의 중심인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